

종합감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3년 고령군 경상북도종합감사 —

2023. 4.



< 재심의 결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 1.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수	금액	감액	금액	추징	금액	
계			21건	10	11	3	115,440	6	506,263	1	2,457
1	■ ■ 과	임기제공무원(●●●●●분야) 채용 부적정		1							
2	□□□□□관	외부강의 미신고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1								
3	▣▣▣▣실 등 36개 부서(기관)	시간외근무 부적정 및 복무관리 소홀		1 (기관 경고)							
4	▤▤▤▤과	의료급여 사업 추진 부적정	1				1	158 (환급)	1	2,457	
5	○ ○ 과 ▨ ▨ 과	관급자재 구매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1							
6	○ ○ 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증명서 확인 소홀		1							
7	⊕ ⊕ ⊕ ⊕ 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1							
8	▣ ▣ 과	수문권양기 구매계약 부적정		1							
9	▣▣▣음 등 5개 읍·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 처리 부적정		1 (통보)							
10	⊕ ⊕ ⊕ ⊕ 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등 업무처리 부적정	1		1	45					
11	■ ■ ■ ■ 과	농산물유통센터 종합자재판매장 건립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1							
12	○ ○ 과	특정인의 기술·자격 등 사유의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1							
13	▲▲▲▲▲과 ▽▽▽▽과 ●●●●과	공장설립승인 및 사후관리 부적정	1								
14	▣ ▣ 과	◆◆◆◆◆(◎◎)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1				1	63,174			
15	▣ ▣ 과	▣▣▣호(▶리~◀리) 도로 확장공사 추진 부적정	1				1	54,159			
16	▣ ▣ 과	도로 확장공사 추진 부적정	1				1	42,520			

번호	소관	건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시정	주의	회수	금액	감액	금액	추징	금액
17	□ □ 과	▲▲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부적정	1							
18	▣ ▣ 과	▼▼ 순환도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1		1	4,149	1	58,269		
19	▤ ▤ 과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1		1	111,246	1	287,983		
20	▲▲▲▲▲ 과	건축허가(신고) 업무 부적정		1						
21	▲▲▲▲▲ 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부적정		1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일반임기제공무원(●●●●●분야) 채용 부적정  
소 관 청 고령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고령군에서는 ●●●●●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2020. 5. 20. 2020년도 제2회 고령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공고하고, 응시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면접 시행 후 2020. 6. 25. ●●●●●(◆급 상당)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 1명을 채용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고,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각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27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하되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그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경력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법제처법령해석(안건번호 19-0691, 2019. 12. 27.)에 따르면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기제공무원 등의 임용 요건과 관련하여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고령군에서는 2020. 5. 15. 인사위원회에서 ●●●●●(◆급 상당)분야 일반 임기제공무원 1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20. 5. 20. ‘제☒회 고령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공고 하면서 다음 [표 1]과 같이 ●●●●●분야 응시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제1차 시험인 서류심사전형에서는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채용 자격기준 심사와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하였다.

[표 1] 일반임기제공무원(●●●●●분야) 응시자격요건

임용 분야	임용 자격기준	비고
●●●●● 일반임기제 지방♣♣♣♣♣ (◆급 상당)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사람 ※관련학과 : ●●과, ●●학과, ●●경영학과, ●●개발학과, ●●산업과, ●●문화학과 ※직무분야 : 공공 또는 민간기관에서 국내외 ●●●●●, ●●레저, 국제※※※※, ●●●●유치 해외홍보 ●● 관련 교육 등 ●●●●● 관련 분야 실무경력 ※우대사항 : 외국어 능력 우수자(중국어, 일본어 등)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b>공고일 현재 관련분야 최근 실무경력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b>		

따라서 고령군에서는 일반임기제공무원(●●●●●분야) 채용 관련 응시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요건 등을 면밀하게 검증 및 확인하되, 특히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등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력만을 인정하여 자격요건 등에 부합되지 않은 자는 1차 서류심사전형에서 제외하고 자격에 부합되는 응시자만을 대상으로 2차 면접시험을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등 일반 임기제공무원(●●●●●분야) 채용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고령군에서는 다음 [표 2]와 같이 일반임기제공무원(●●●●●분야)에 응시한 3명의 응시자 중 1명인 ‘●●●’의 경우 ▲▲대학교 ▼▼▼▼전공 학사학위(2018.2.22.)를 취득하여 관련분야 학사학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관련 분야 실무경력으로

제출한 ‘(주)○○○○ 및 주식회사 ×××’의 경력증명서의 경우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 분야인 ●●●●●과 무관한 ‘자사 제품 판매를 위한 영업마케팅 경력’이며, ‘(주)□□’의 경력증명서의 경우는 ‘●●●●● 분야와 관련되거나 ‘퇴직 후 3년이 지난 경력’으로 채용공고상의 응시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1차 서류심사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격처리 후 2차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였다.

[표 2] ●●●●●분야 응시자 및 합격 현황

연번	응시자	제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점수)	최종합격
		① 관련학과 학사 취득	② 경력	결과		
1	●●●●	△△대 ▽▽▽과 (관련학과 미 충족)	(주)□□ (2010.11.2.~2016.7.31.)	1차 합격	41.33	합격
2	●●●●	△△대 ●●경영학과	○○○○항공 (1996.1.1.~2020.2.21.)	"	34.67	불합격
3	○○○	▽▽대 ●●경영학과	사단법인 ○○○●●협회 (2018.9.27.~현재)	"	34.83	불합격

더욱이 고령군에서는 2020. 6. 18. ●●●을 비롯한 응시자 3명에 대한 서류심사전형 채점표를 별도로 작성하면서 응시자 ●●●의 경우 관련학과를 졸업하지 못하였고, 기 제출한 ‘(주)○○○○, 주식회사 ×××, (주)□□’ 등 3개사의 경력증명서 중 ●●●●● 관련 경력은 ‘(주)□□’에서 ‘2010. 11. 2. ~ 2016. 7. 31.’ 까지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채점표를 작성하면서 상기 경력이 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지난 경력사항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자격요건에 부합한다는 내용으로 내부결재를 득하고 1차 서류심사전형에 합격처리 하였다.

그 결과,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서류심사전형에서 제외되었어야 할 응시자가 면접시험 후 최종적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에 임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령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외부강의 미신고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소 관 청 고령군  
관 계 부 서 □□□□□관  
내 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고령군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또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특히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제공자에게는 그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26호, 2020.9.22.)의 XI.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편에 따르면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외부 강의는 가급적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강의시간은 가급적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군 소속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법령에서 정한 사례금액을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의 경우 40만 원(강의의 경우 1시간 당, 기고의 경우 1건 당)이 사례금 상한액이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6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맞게 외부강의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고령군에서는 다음 [표]와 같이 □□□□□관 지방○○○○○○ ○○○은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사례금을 받은 총 12회의 외부강의를 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았으며, 특히 2021. 10. 29. ㉠㉠㉠문화박물관 주관으로 참석한 ㉠㉠㉠ 학술대회 발표와 관련해서는 사례금 1,000천 원(1회)을 수령하였음에도 신고·반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표] 외부강의 출강(미신고) 및 사례금 수령 현황

(단위 : 천 원)

연번	소속(성명)	출장일	출장지	출장목적	요청기관	사례금	비고
합계			12건		3,985		
1	□□□□□관 지방○○○○○○ ○○○	'20.10.16.	㉠㉠	학술세미나 참석	●●●●● 문화축전위원회	364	
2	"	'20.12.08.	♣♣	학술대회 참석	●●시 문화원연합회	290	
3	"	'21.1.7.	♣♣	유물선별회의	재단법인 ●●문화재연구원	228	
4	"	'21.4.28.	◆◆	☒☒☒사 강의	●●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273	
5	"	'21.10.29.	●●	제6회 ㉠㉠ 학술대회 발표	㉠㉠문화 박물관	1,000	사례금반환대상
6	"	'21.11.26.	⊗⊗	학술대회참석 (☒☒☒사 유산 활용관련 발표)	◆◆◆◆ 문화학회	100	
7	"	'21.12.10.	○○	'21년 ○○ ○○동 고분 100년과 새로운 시작 학술대회	▲△대학교	273	
8	"	'22.5.19.	●●	유물선별회의 참석	재단법인 ▲△문화재 연구원	182	
9	"	'22.6.24.	○○	학술자문회의	재단법인 ▲△문화재 연구원	228	
10	"	'22.6.29.	◆◆	●●산역사문화강의	●●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273	
11	"	'22.11.3.	○○	☒☒☒강의	●●산국립공원 ◆◆탐방원	273	
12	"	'22.11.25.	♣♣	☒☒☒강의	☐☐대학교 ☑☑박물관	501	

그 결과, 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임기제공무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외부강의를 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령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초과 수령한 사례금 등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기 관 경 고 · 주 의 요 구

제 목	시간외근무 부적정 및 복무관리 소홀
소 관 청	고령군
관 계 부 서	□□□□실 등 36개 부서(기관)
내 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고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2022.1.1.)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이란 근무명령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시간 외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며, 개인별 자기입력장치(지문인식기-이하 “전산장비”라 한다)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시간외근무를 관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무 명령권자(부서의 장)의 사전명령 또는 사후승인을 받고 시간외근무내역 보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0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96호, 2022.1.1.)에서는 ‘출근’을 근무시작 전까지 근무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 ‘퇴근’을 그날의 업무를 종료하고 근무종료 시간 이후에 근무장소를 떠나는 것, ‘출장’을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2022.1.1.)에 따르면 출장중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나, 시간외근무의 명령 및 승인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시간외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무장소 외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엄격히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2)</sup>

한편, 고령군에서는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고령군 행정기관(조직)을 구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하고 있으며 각 행정기관(조직)별로 전산장비가 23개(본청 2, 직속기관 4, 사업소 7, 읍면 10)설치되어 있고, 2022년 6월부터는 표준인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출퇴근 내역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군에서는 근무장소 외의 시간외근무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의 장(시간외근무명령권자)은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시하여 시간외근무 명령을 발하고, 소속직원들은 소속기관의 장이 출·퇴근 시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에 설치된 전산장비에 출·퇴근 내역을 입력하여 투명하게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각 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속직원들이 자신의 소속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 설치된 전산 장비에 출·퇴근 내역을 입력하여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했다.

또한, 상사의 명 없이 정규 근무지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근무지 외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서는 업무목적과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된 출장명령 등으로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실제로 시간외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고령군에서는 아래 [붙임]과 같이 2022. 1. 1. ~ 감사일 현재까지

---

2) 구제역 방역 등 필연적 시간외근무 발생이 예상되는 비상근무를 위해 근무지내 출장명령을 받고 비상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으로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는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의 병급 가능

□□□□실 ◀◀8급 ▶▶▶ 등 총 198명이 자택 근처의 타 부서(기관) 전산장비에 출퇴근 내역을 입력하는 방식 등으로 신청한 총 14,960천 원의 근무지 외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 별도의 출장명령이나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지급하고, 출장명령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고령군수는

- 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부합되지 않게 시간외근무 관련 직원 복무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고령군에 대해서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에 따라 **기관경고** 조치하오니,(기관경고)
- ②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붙임]

타 부서(기관)에서 시간외근무(출퇴근) 실적 입력 현황

(단위 : 원)

연번	대상자	직급	일시	시간	단가	지급액	당시 근무지	출근장소	퇴근장소	출장등록여부
총계	198명					14,960,240				
1	↑↑↑↑	◆◆8	2022-03-14	1	9,992	9,990	@@@실	@@@실	※※※○○소	부
		◆◆8	2022-03-23	2	9,992	19,980	@@@실	@@@실	※※※○○소	부
		◆◆8	2022-04-04	2	9,992	19,980	@@@실	@@@실	※※※○○소	부
2	●●●	◆◆6	2022-11-19	3	12,321	36,960	@@@실	@@@실	☆☆○○장	부
3	▲▲▲	◆◆8	2022-10-03	2	9,992	19,980	@@@실	@@@실	☆☆○○장	부
4	▽▽▽	◆◆6	2022-04-13	-	12,321	-	★★★★과	★★★★과	○○○○소	부
5	○○○	◆◆8	2022-03-07	1	9,992	9,990	●●과	※※※○○소	※※※○○소	부
		◆◆8	2022-03-08	4	9,992	39,960	●●과	※※※○○소	※※※○○소	부
6	■	◆◆7	2022-07-31	4	11,130	44,520	●●과	●●과	○○○	부
7	△△△	◆◆7	2022-04-08	2	11,130	22,260	◇◇◇과	○○○○◇◇	○○○○◇◇	부
			2022-04-09	4	11,130	44,520	◇◇◇과	◇◇◇과	○○○○◇◇	부
			2022-05-07	-	11,130	-	◇◇◇과	○○○○◇◇	○○○○◇◇	부
8	▲▲▲	□□□□6	2022-03-10	-	12,321	-	●●과	●●과	○○○○소	부
			2022-04-02	4	12,321	49,280	●●과	●●과	○○○○소	부
			2022-04-14	-	12,321	-	●●과	●●과	○○○○소	부
			2022-04-18	-	12,321	-	●●과	●●과	○○○○소	부
			2022-04-19	-	12,321	-	●●과	●●과	○○○○소	부
			2022-04-20	-	12,321	-	●●과	●●과	○○○○소	부
			2022-05-05	4	12,321	49,280	●●과	○○○○소	●●과	부
2022-05-15	4	12,321	49,280	●●과	○○○○소	●●과	부			
9	▽▽▽	◆◆8	2022-01-07	2	9,992	19,980	◆◆과	◆◆과	○○○○소	부
			2022-01-08	4	9,992	39,960	◆◆과	○○○○소	○○○○소	부
			2022-02-09	4	9,992	39,960	◆◆과	◆◆과	○○○○소	부
			2022-02-26	4	9,992	39,960	◆◆과	◆◆과	○○○○소	부
			2022-04-08	2	9,992	19,980	◆◆과	◆◆과	△△△○○소	부
			2022-04-30	4	9,992	39,960	◆◆과	◆◆과	△△△○○소	부
			2022-05-21	4	9,992	39,960	◆◆과	◆◆과	○○○○소	부
10	▼▼▼	◆◆8	2022-01-02	4	9,992	39,960	●●과	○○○○소	○○○○소	부
11	☆☆☆	♀♀♀9	2022-01-02	4	9,160	36,640	◆◆♀♀과	◆◆♀♀과	※※※○○소	부
			2022-01-04	2	9,160	18,320	◆◆♀♀과	◆◆♀♀과	※※※○○소	부
12	★★★	♀♀♀♀9	2022-03-06	4	9,160	36,640	◆◆♀♀과	○○○○♀♀소	○○○○♀♀소	부
			2022-03-11	2	9,160	18,320	◆◆♀♀과	○○○○♀♀소	◆◆♀♀과	부
			2022-03-20	4	9,160	36,640	◆◆♀♀과	○○○○♀♀소	◆◆♀♀과	부
			2022-04-04	1	9,160	9,160	◆◆♀♀과	◆◆♀♀과	○○○○♀♀소	부
			2022-05-12	3	9,160	27,480	◆◆♀♀과	◆◆♀♀과	○○○○♀♀소	부
13	○○○	♀♀♀♀6	2022-03-19	3	12,321	36,960	□□	○○○○◇◇	○○○○◇◇	부
			2022-05-05	4	12,321	49,280	□□	○○○○◇◇	○○○○◇◇	부
14	●●●	♀♀♀♀7	2022-04-02	2	11,130	22,260	★★★★과	△△△○○소	△△△○○소	부
15	○○○	◆◆7	2022-05-03	-	-	-	◆◆♀♀과	△△△○○소	◆◆♀♀과	부
			2022-05-09	-	-	-	◆◆♀♀과	△△△○○소	◆◆♀♀과	부
			2022-05-11	-	-	-	◆◆♀♀과	△△△○○소	◆◆♀♀과	부
16	◇◇◇	◁16	2022-03-21	-	12,321	-	▲▲▲과	○○○	-	부
			2022-05-08	4	12,321	49,280	▲▲▲과	▲▲	○○○○♀♀	부
17	◆◆◆	♀♀♀♀7	2022-05-08	4	11,130	44,520	○○○	○○○	▲▲	부
18	≡≡≡	♡♡♡♡	2022-03-18	-	11,130	-	★★★★과	★★★★과	○○○	부
			2022-03-23	-	11,130	-	★★★★과	★★★★과	○○○	부
19		◆◆6	2022-01-06	1	12,321	12,320	◆◆♀♀과	●●과	○○○○소	부
20		◆◆7	2022-01-06	1	11,130	11,130	◆◆♀♀과	●●과	○○○○소	부

연번	대상자	직급	일시	시간	단가	지급액	당시 근무지	출근장소	퇴근장소	출장등록여부
21	☒☒☒	◆◆8	2022-01-01	4	9,992	39,960	▲▲▲▲국 ★★★★★과	▲▲▲▲과	▲▲▲▲과	부
			2022-03-19	2	9,992	19,980	▲▲▲▲국 ★★★★★과	△△△△소	△△△△소	부
			2022-04-13	-	9,992	-	▲▲▲▲국 ★★★★★과	★★★★★과	○○○○소	부
			2022-04-26	-	9,992	-	▲▲▲▲국 ★★★★★과	★★★★★과	□□□□소	부
22	☒☒☒	☒☒8	2022-10-16	3	9,992	29,970	◆◆☒☒과	◆◆☒☒과	♡♡☒	부
23	●●●	◆◆8	2022-05-05	4	9,992	39,960	○○○	○○○	▲▲	부
24	▲▲▲	☒☒☒6	2022-05-05	4	12,321	49,280	○○○	▲▲	▲▲	부
			2022-11-26	4	12,321	49,280	▽▽▽과	▽▽▽과	▽▽☒☒관	부
25	▽▽▽	☒☒☒8	2022-05-08	4	9,992	39,960	○○○	▲▲	○○○△△☒☒	부
			2023-01-09	4	10,162	40,640	▽▽▽과	▽▽▽과	▽▽☒☒관	부
26	●●●	◆◆6	2022-05-08	4	12,321	49,280	◇◇◇◇과	▲▲(◇◇◇◇과)	○○○	부
27	■	◁▷17	2022-04-24	4	11,130	44,520	★★★★★과	★★★★★과	○○○	부
			2022-05-07	4	11,130	44,520	★★★★★과	★★★★★과	○○○	부
28	△△△	◁▷17	2022-01-02	4	11,130	44,520	★★★★★과	▲▲(▽▽과)	▲▲(▽▽과)	부
			2022-01-16	2	11,130	22,260	★★★★★과	▲▲(▽▽과)	▲▲(▽▽과)	부
			2022-01-24	1	11,130	11,130	★★★★★과	★★★★★과	△△△△소	부
			2022-02-27	3	11,130	33,390	★★★★★과	★★★★★과	▲▲(▽▽과)	부
29	▲▲▲	◆◆9	2022-05-19	1	9,160	9,160	◆◆과	▽▽신청	○○○○소	부
30	▽▽▽	◁▷17	2022-01-28	1	11,130	11,130	◆◆과	▽▽신청	○○○○소	부
31	▽▽▽	◆◆6	2022-09-17	4	12,321	49,280	★★★★★과	○○○	○○○☒☒관	부
32	☆☆☆	◁▷18	2022-01-08	4	9,992	39,960	◆◆과	○○○○소	▽▽☒☒관	부
			2022-02-26	4	9,992	39,960	◆◆과	▽▽신청	○○○○소	부
			2022-04-30	3	9,992	29,970	◆◆과	○○○○소	▽▽☒☒관	부
			2022-05-14	3	9,992	29,970	◆◆과	▽▽신청	▽▽☒☒관	부
33	★★★	◁▷19	2022-01-28	1	9,160	9,160	◆◆과	▽▽신청	○○○○소	부
			2022-04-19	1	9,160	9,160	◆◆과	▽▽신청	◁▷☒☒소	부
			2022-04-21	1	9,160	9,160	◆◆과	▽▽신청	△△△△소	부
			2022-04-22	1	9,160	9,160	◆◆과	▽▽신청	○○○○소	부
			2022-04-25	2	9,160	18,320	◆◆과	▽▽신청	○○○○소	부
			2022-05-07	4	9,160	36,640	◆◆과	△△△△소	○○○○소	부
			2022-05-08	4	9,160	36,640	◆◆과	△△△△소	△△△△소	부
34	○○○	☆☆6	2022-03-13	4	12,321	49,280	▽▽과	▽▽과	○○○▲▲관	부
			2022-06-04	4	12,321	49,280	▽▽과	▽▽과	○○○▲▲관	부
			2022-08-14	4	12,321	49,280	▽▽과	▽▽과	○○○▲▲관	부
35	●●●	☆☆9	2022-05-07	4	9,160	36,640	▽▽과	○○○☒☒소	▽▽과	부
36	○○○	☆☆6	2022-03-13	3	12,321	36,960	▽▽과	△△△△소	▽▽과	부
37	◇◇◇	☆☆6	2022-01-01	4	12,321	49,280	◆◆과	○○○○소	○○○○소	부
38	◆◆◆	☆☆8	2022-05-05	4	9,992	39,960	◁▷☒	◁▷☒소	○○○☒☒	부
			2022-05-08	4	9,992	39,960	◁▷☒	○○○△△☒☒	◁▷☒소	부
39	☒☒☒	◆◆7	2022-05-07	4	11,130	44,520	▽▽과	○○○△△☒☒	○○○○소	부
40	☒☒☒☒	☒☒6	2022-02-20	1	12,321	12,320	▽▽과	○○○▲▲관	▽▽과	부
			2022-05-01	4	12,321	49,280	▽▽과	▽▽과	○○○▲▲관	부
41	☒☒☒	◆◆6	2022-01-02	2	12,321	24,640	○○○	▲▲	▲▲	부
			2022-01-03	-	12,321	-	○○○	▲▲	▲▲	부
42	☒☒☒	◆◆7	2022-03-24	1	11,130	11,130	@@@@실	▽▽신청	☒☒☒☒☒☒☒☒☒☒	부
43	☒☒☒	◆◆9	2022-10-22	-	9,992	-	◁▷☒	◁▷☒소	○○○○소	부
44	●●●	◆◆7	2022-03-24	1	11,130	11,130	@@@@실	▲▲	☒☒☒☒☒☒	부
45	▲▲▲	◁▷17	2022-01-01	3	11,130	33,390	◁▷◁▷1단	△△△△소	▽▽신청	부
			2022-01-02	3	11,130	33,390	◁▷◁▷1단	△△△△소	○○○○소	부
			2022-01-09	4	11,130	44,520	◁▷◁▷1단	▽▽신청	△△△△소	부
			2022-01-16	3	11,130	33,390	◁▷◁▷1단	○○○○소	▽▽신청	부
			2022-02-13	4	11,130	44,520	◁▷◁▷1단	▽▽신청	○○○○소	부
			2022-03-09	4	11,130	44,520	◁▷◁▷1단	▽▽신청	○○○○소	부
46	▽▽▽	◁▷18	2022-01-10	2	9,992	19,980	***	▽▽신청	▽▽신청	부



연번	대상자	직급	일시	시간	단가	지급액	당시 근무지	출근장소	퇴근장소	출장등록여부
			2022-03-14	2	9,992	19,980	@@@@실	@@@@실	○○○▲▲관	부
			2022-04-12	2	9,992	19,980	@@@@실	@@@@실	○○○▲▲관	부
66	▲▲▲	◁연구사	2022-04-08	1	11,876	11,870	◇◇◇◇과	◇◇◇◇과	○○○◇◇◇	부
			2022-04-09	4	11,876	47,500	◇◇◇◇과	○○○◇◇◇	○○○◇◇◇	부
67	▽▽▽	◆◆9	2022-01-02	4	9,160	36,640	※※※○소	※※※○소	▲▲▲과	부
			2022-01-03	1	9,160	9,160	※※※○소	※※※○소	▲▲▲과	부
			2022-01-05	2	9,160	18,320	※※※○소	※※※○소	▲▲▲과	부
68	○○○	◁19	2022-04-08	1	9,160	9,160	◇◇◇◇과	○○○◇◇◇	○○○◇◇◇	부
			2022-04-09	4	9,160	36,640	◇◇◇◇과	○○○◇◇◇	○○○◇◇◇	부
			2022-05-12	-	9,160	-	◇◇◇◇과	◇◇◇◇과	○○○◇◇◇	부
69	■	◁16	2022-01-08	3	12,321	36,960	△△과	○○○	△△과	부
			2022-01-15	4	12,321	49,280	△△과	○○○	△△과	부
			2022-05-21	4	12,321	49,280	△△과	○○○	△△과	부
70	△△△	■	2022-01-15	3	9,523	28,560	△△과	○○○	△△과	부
71	▲▲▲	◁16	2022-05-17	-	12,321	-	△△과	△△과	○○○	부
72	▽▽▽	◁18	2022-01-11	3	9,992	29,970	○○○	▲▲	▲▲	부
			2022-01-12	3	9,992	29,970	○○○	▲▲	▲▲	부
			2022-01-15	3	9,992	29,970	○○○	▲▲	▲▲	부
			2022-01-18	3	9,992	29,970	○○○	▲▲	▲▲	부
			2022-01-19	3	9,992	29,970	○○○	▲▲	▲▲	부
			2022-01-20	3	9,992	29,970	○○○	▲▲	▲▲	부
			2022-01-21	3	9,992	29,970	○○○	▲▲	▲▲	부
			2022-01-22	4	9,992	39,960	○○○	▲▲	▲▲	부
			2022-01-24	3	9,992	29,970	○○○	▲▲	▲▲	부
			2022-01-25	3	9,992	29,970	○○○	▲▲	▲▲	부
			2022-01-27	1	9,992	9,990	○○○	▲▲	▲▲	부
			2022-04-02	3	9,992	29,970	○○○	○○○	△△△△△△	부
2023-01-08	2	10,162	20,320	△△과	※※※	△△과	부			
73	▽▽▽	◁19	2022-01-10	2	9,160	18,320	◁△	▲▲	▲▲	부
			2022-01-11	3	9,160	27,480	◁△	▲▲	▲▲	부
			2022-01-13	2	9,160	18,320	◁△	▲▲	▲▲	부
			2022-01-17	1	9,160	9,160	◁△	▲▲	▲▲	부
			2022-01-18	2	9,160	18,320	◁△	▲▲	▲▲	부
			2022-01-20	3	9,160	27,480	◁△	▲▲	▲▲	부
			2022-01-21	3	9,160	27,480	◁△	▲▲	▲▲	부
			2022-01-24	3	9,160	27,480	◁△	▲▲	▲▲	부
			2022-01-27	1	9,160	9,160	◁△	▲▲	▲▲	부
74	☆☆☆	◁17	2022-01-11	2	11,130	22,260	♡♡	▲▲	▲▲	부
			2022-01-17	1	11,130	11,130	♡♡	▲▲	▲▲	부
			2022-01-20	1	11,130	11,130	♡♡	▲▲	▲▲	부
			2022-01-21	3	11,130	33,390	♡♡	▲▲	▲▲	부
			2022-01-27	1	11,130	11,130	♡♡	▲▲	▲▲	부
75	★★★	◆◆6	2022-01-01	4	12,321	49,280	△△과	○○○◇◇◇	▲▲	부
76	○○○	◆◆8	2022-01-01	4	9,992	39,960	▲▲▲과	◁△	▲▲	부
77	●●●	㉑9	2022-01-08	3	9,160	27,480	▲▲▲과	△△○○○관	▲▲	부
78	○○○	◁17	2022-01-16	3	11,130	33,390	▲▲▲과	▽▽△△△관	-	부
			2022-01-22	3	11,130	33,390	▲▲▲과	▽▽△△△관	▽▽△△△관	부
			2022-02-13	4	11,130	44,520	▲▲▲과	▽▽△△△관	▽▽△△△관	부
			2022-02-19	4	11,130	44,520	▲▲▲과	▽▽△△△관	▽▽△△△관	부
			2022-02-27	4	11,130	44,520	▲▲▲과	▽▽△△△관	▽▽△△△관	부
			2022-03-06	3	11,130	33,390	▲▲▲과	▽▽△△△관	▽▽△△△관	부
			2022-03-13	3	11,130	33,390	▲▲▲과	▽▽△△△관	▽▽△△△관	부
			2022-03-27	4	11,130	44,520	▲▲▲과	▽▽△△△관	▽▽△△△관	부
			2022-04-10	3	11,130	33,390	▲▲▲과	-	▽▽△△△관	부
2022-04-16	3	11,130	33,390	▲▲▲과	-	▽▽△△△관	부			

연번	대상자	직급	일시	시간	단가	지급액	당시 근무지	출근장소	퇴근장소	출장등록여부
			2022-04-22	3	11,130	33,390	▲▲▲▲과	-	▼▼♀♀관	부
			2022-04-24	2	11,130	22,260	▲▲▲▲과	-	▼▼♀♀관	부
			2022-04-30	4	11,130	44,520	▲▲▲▲과	▼▼♀♀관	▼▼♀♀관	부
79	◇◇◇◇	<16	2022-05-08	4	11,130	49,280	♂♂과	○○○▲▲관	▲▲	부
80	◆◆◆◆	◆◆7	2022-05-08	4	12,321	44,520	♂♂과	▲▲	○○○◇♀♀	부
81	▤▤▤▤	◆◆9	2022-04-16	4	9,160	36,640	♂♂과	▲▲ ♂♂과	○○○▲▲관	부
82	▥▥▥▥	<18	2022-08-28	1	9,992	9,990	♂♂과	♂♂과	○○○▲▲관 당직실	부
83	▧▧▧▧	▩▩9	2022-01-15	1	9,160	9,160	♂♂과	○○○●●소	○○○●●소	부
84	▨▨▨▨	<17	2023-02-05	2	11,319	22,630	♣♣과	♣♣과	▲▲관 당직실	부
			2022-02-19	2	12,321	24,640	♣♣과	○○○●●소	○○○●●소	부
			2022-04-09	3	12,321	36,960	♣♣과	○○○●●소	○○○●●소	부
86	●●●●	<17	2022-04-09	2	11,130	22,260	♣♣과	○○○●●소	○○○●●소	부
			2022-03-05	3	9,160	27,480	<18♂	▲▲	▲▲	부
			2022-05-07	4	9,160	36,640	<18♂	▲▲	▲▲	부
			2022-01-31	4	12,321	49,280	▲▲▲▲과	▼▼♂청	○○○●●소	부
			2022-02-19	4	12,321	49,280	▲▲▲▲과	○○○	▼▼♂청	부
			2022-02-27	4	12,321	49,280	▲▲▲▲과	○○○	▼▼♂청	부
89	○○○○	<17	2022-05-03	2	9,992	19,980	♣♣과	▲▲	○○○●●소	부
			2022-04-09	4	12,321	49,280	◇◇◇◇과	○○○◇♀♀	▼▼♂청	부
			2022-05-08	4	12,321	49,280	◇◇◇◇과	▼▼♂청	○○○◇♀♀	부
91	△△△△	◆◆9	2022-03-15	1	9,160	9,160	♣♣♣♣과	▼▼♂청	♡♡♂●●소	부
			2022-01-01	4	12,321	49,280	♣♣♣♣과	○○○◇♀♀	○○○◇♀♀	부
			2022-01-02	4	12,321	49,280	♣♣♣♣과	○○○◇♀♀	○○○◇♀♀	부
			2022-01-08	4	12,321	49,280	♣♣♣♣과	▼▼♂청	○○○◇♀♀	부
			2022-01-15	4	12,321	49,280	♣♣♣♣과	▼▼♂청	○○○◇♀♀	부
			2022-05-05	4	12,321	49,280	♣♣♣♣과	○○○◇♀♀	○○○◇♀♀	부
			2022-05-21	4	12,321	49,280	♣♣♣♣과	▼▼♂청	○○○◇♀♀	부
93	▽▽▽▽	<16	2022-05-07	4	12,321	49,280	♣♣♣♣과	▼▼♂청	△△△	부
			2022-04-08	2	9,992	19,980	◇◇◇◇과	▼▼♂청	○○○◇♀♀	부
			2022-04-09	4	9,992	39,960	◇◇◇◇과	○○○◇♀♀	○○○◇♀♀	부
			2022-05-07	2	9,992	19,980	◇◇◇◇과	▼▼♂청	○○○◇♀♀	부
95	☆☆☆☆	●●7	2022-10-09	4	9,992	39,960	♂♂♂♂과	♂♂♀♀♀♀과 ♂♂♂♂과	▼▼♂청 ♂♂♂♂과	부
96	★★★	♂♂7	2022-05-08	4	11,130	44,520	○○○	○○○●●소	▲▲	부
97	○○○	♂♂7	2022-03-26	2	11,130	22,260	♂♂♀♀♀♀과 ♂♂●●과	♡♡♂●●소	♡♡♂●●소	부
			2022-03-08	3	11,130	33,390	@@@@실	▲▲	○○○♂	부
			2022-03-19	4	11,130	44,520	@@@@실	○○○♂	▲▲	부
			2022-03-26	4	11,130	44,520	@@@@실	○○○♂	▲▲	부
			2022-05-07	4	9,992	39,960	<18♂	○○○◇♀♀	○○○◇♀♀	부
			2022-10-22	4	9,992	39,960	♂♂●●과	<18♂●●소	♂♂●●과	부
			2022-04-25	2	9,992	19,980	♂♂♀♀♀♀과 ♂♂●●과	♂♂♀♀♀♀과	<18♂	부
			2022-05-13	2	9,992	19,980	♂♂♀♀♀♀과 ♂♂●●과	♂♂♀♀♀♀과	<18♂	부
			2022-01-22	-	11,130	-	♂♂♀♀♀♀과 ♀♀♀♀과	♂♂♀♀♀♀과	♂♂♀♀♀♀과	부
			2022-01-23	-	11,130	-	♂♂♀♀♀♀과 ♀♀♀♀과	♂♂♀♀♀♀과	♂♂♀♀♀♀과	부
			2022-01-24	-	11,130	-	♂♂♀♀♀♀과 ♀♀♀♀과	♂♂♀♀♀♀과	♂♂♀♀♀♀과	부
			2022-01-25	-	11,130	-	♂♂♀♀♀♀과 ♀♀♀♀과	♂♂♀♀♀♀과	♂♂♀♀♀♀과	부
			2022-01-28	-	11,130	-	♂♂♀♀♀♀과 ♀♀♀♀과	♂♂♀♀♀♀과	♂♂♀♀♀♀과	부
			2022-01-29	-	11,130	-	♂♂♀♀♀♀과 ♀♀♀♀과	♂♂♀♀♀♀과	♂♂♀♀♀♀과	부
			2022-01-30	-	11,130	-	♂♂♀♀♀♀과 ♀♀♀♀과	♂♂♀♀♀♀과	♂♂♀♀♀♀과	부
102	▤▤▤▤	♂♂9	2022-04-30	4	9,160	36,640	♂♂♀♀♀♀과 ▷▷▷▷▷과	♂♂♀♀♀♀과	※※※●●소	부

연번	대상자	직급	일시	시간	단가	지급액	당시 근무지	출근장소	퇴근장소	출장등록 여부
103		♣♣6	2022-01-29	-	12,321	-	♣♣♣♣♣♣ ♣♣♣♣♣♣	▲▲	♣♣♣♣♣♣	부
104		♣♣7	2022-02-11	1	11,130	11,130	♣♣♣♣♣♣ ▷▷▷▷▷▷과	♣♣♣♣♣♣	○○○○◇♣♣♣	부
105		♣♣6	2022-05-05	4	12,321	49,280	♣♣♣♣♣♣ ▷▷▷▷▷▷과	♣♣♣♣♣♣	▲▲▲	부
106		♣♣5	2022-05-07	-	14,446	-	♣♣♣♣♣♣	○○○○♣	○○○○♣	부
107	●●●	♣♣7	2022-05-05	4	11,130	44,520	○○○○♣과	♣청	▲▲▲	부
108	▲▲▲	♣♣7	2022-01-13	-	11,130	-	♣♣♣♣♣과	○○○○◇♣♣♣		부
109	▼▼▼	♣♣6	2022-05-05	4	12,321	49,280	♣♣♣♣♣과	○○○	♣♣♣♣♣♣ ♣♣♣♣♣♣	부
110	○○○	♣♣6	2022-01-05	-	12,321	-	♣♣♣♣♣과	♣♣♣♣♣♣ ♣♣♣♣♣♣	▲▲▲	부
			2022-01-06	-	12,321	-	♣♣♣♣♣과	♣♣♣♣♣♣ ♣♣♣♣♣♣	▲▲▲	부
			2022-01-07	-	12,321	-	♣♣♣♣♣과	♣♣♣♣♣♣ ♣♣♣♣♣♣	▲▲▲	부
			2022-01-18	-	12,321	-	♣♣♣♣♣과	♣♣♣♣♣♣ ♣♣♣♣♣♣	▲▲▲	부
			2022-01-20	-	12,321	-	♣♣♣♣♣과	♣♣♣♣♣♣ ♣♣♣♣♣♣	▲▲▲	부
			2022-02-09	-	12,321	-	♣♣♣♣♣과	♣♣♣♣♣♣ ♣♣♣♣♣♣	▲▲▲	부
			2022-03-30	-	12,321	-	♣♣♣♣♣과	♣♣♣♣♣♣ ♣♣♣♣♣♣	○○○○◇♣♣♣	부
			2022-04-26	-	12,321	-	♣♣♣♣♣과	♣♣♣♣♣♣ ♣♣♣♣♣♣	▲▲▲	부
			2022-05-02	-	12,321	-	♣♣♣♣♣과	♣♣♣♣♣♣ ♣♣♣♣♣♣	▲▲▲	부
			2022-05-06	-	12,321	-	♣♣♣♣♣과	♣♣♣♣♣♣ ♣♣♣♣♣♣	▲▲▲	부
			2022-05-13	-	12,321	-	♣♣♣♣♣과	♣♣♣♣♣♣ ♣♣♣♣♣♣	▲▲▲	부
			2022-05-19	-	12,321	-	♣♣♣♣♣과	♣♣♣♣♣♣ ♣♣♣♣♣♣	▲▲▲	부
2022-05-20	-	12,321	-	♣♣♣♣♣과	○○○○◇♣♣♣	▲▲▲	부			
111	■	♣♣6	2022-05-05	4	12,321	49,280	♣♣♣♣♣과	***	♣♣♣♣♣♣ ♣♣♣♣♣♣	부
112	▲▲▲	◀♣6	2022-04-18	4	12,321	49,280	◀◀◆◆과 (♣♣♣♣♣지소)	***♣♣소	***♣♣소	부
			2022-10-19	4	12,321	49,280	◀◀◆◆과 (♣♣♣♣♣지소)	♣♣♣♣♣지소	♣♣♣♣♣지소	부
113	▲▲▲	◀♣6	2022-05-07	4	12,321	49,280	◀◀◆◆과 (□□♣♣♣지소)	□□♣♣♣소	□□♣♣♣소	부
			2022-08-29	3	12,321	36,960	◀◀◆◆과 (□□♣♣♣지소)	□□♣♣♣소	□□♣♣♣소	부
114	▽▽▽	◆◆6	2022-07-16	3	12,321	36,960	◆◆♣♣♣과	◆◆♣♣♣과	◀◀◆◆과	부
			2022-10-29	4	12,321	49,280	◀◀◆◆과	□□♣♣ ○○◀◀진료소	◀◀◆◆과	부
115	▼▼▼	◀♣8	2022-12-10	4	9,992	39,960	◀◀◆◆과	◀◀◆◆과 ○○○○○	◀◀◆◆과	부
116	☆☆☆	8	2022-08-15	2	9,992	19,980	◀◀◆◆과	◀◀◆◆과 ○○○○○○○○○○본부	◀◀◆◆과	부
117	★★★	8	2022-06-06	4	9,992	39,960	◀◀◆◆과 (♡♡♣♣♣지소)	◀◀◆◆과	◀◀◆◆과 ○○○○○	부
118	○○○	♡♡♡♡ 마감	2022-07-19	-	-	-	♡♡♡♡과	◀◀◆◆과 ▼▼♣♣♣지소 (♡♡♡♡♡센터)	♡♡♡♡과 (♡♡♡♡♡센터)	부
119	●●●	♡♡♡♡ 마감	2022-07-21	-	-	-	♡♡♡♡과	♡♡♡♡과 (♡♡♡♡♡센터)	♡♡♡♡과 (♡♡♡♡♡센터)	부
120	○○○	♡♡♡♡ 마감	2023-01-09	-	-	-	♡♡♡♡과	♡♡♡♡과 (♡♡♡♡♡센터)	◀◀◆◆과 ▼▼♣♣♣지소 (▼▼○○○센터)	부
			2023-01-11	-	-	-	♡♡♡♡과	◀◀◆◆과 ▼▼♣♣♣지소 (♡♡♡♡♡센터)	♡♡♡♡과 (♡♡♡♡♡센터)	부

연번	대상자	직급	일시	시간	단가	지급액	당시 근무지	출근장소	퇴근장소	출장등록 여부
			2023-02-02	-	-	-	♡♡♡♡과	◀◀◀◀과 ▼▼◀◀지소 (▼▼◎◎침터)	♡♡♡♡과 (♡♡♡♡센터)	부
			2023-02-09	-	-	-	♡♡♡♡과	◀◀◀◀과 ▼▼◀◀지소 (▼▼◎◎침터)	♡♡♡♡과 (♡♡♡♡센터)	부
121	◇◇◇◇	♡♡♡♡ ♡♡♡♡ 마급	2023-01-09	-	-	-	♡♡♡♡과	♡♡♡♡과 (♡♡♡♡센터)	◀◀◀◀과 ▼▼◀◀지소 (▼▼◎◎침터)	부
			2023-01-10	-	-	-	♡♡♡♡과	♡♡♡♡과( ♡♡♡♡센터)	◀◀◀◀과 ▼▼◀◀지소 (▼▼◎◎침터)	부
			2023-01-11	-	-	-	♡♡♡♡과	◀◀◀◀과 ▼▼◀◀지소 (♡♡♡♡침터)	▼▼♠◀◀소 (♡♡♡♡센터)	부
			2023-02-02	-	-	-	♡♡♡♡과	◀◀◀◀과 ▼▼◀◀지소 (▼▼◎◎침터)	▼▼♠◀◀소 (♡♡♡♡센터)	부
122	◆◆◆◆	♡♡♡♡ ♡♡♡♡ 마급	2023-02-09	-	-	-	♡♡♡♡과 (♡♡♡♡유유센터)	♡♡♡♡과 (♡♡♡♡유유센터)	부	
123	≡≡≡≡	♡♡♡♡ ♡♡♡♡ 마급	2022-01-03	-	-	-	♡♡♡♡과	○○○○◎소	○○○○◎소	부
			2022-01-05	-	-	-	♡♡♡♡과	○○○○◎소	○○○○◎소	부
			2022-01-06	-	-	-	♡♡♡♡과	○○○○◎소	○○○○◎소	부
			2022-01-06	-	-	-	♡♡♡♡과	○○○○◎소	○○○○◎소	부
			2022-01-07	-	-	-	♡♡♡♡과	○○○○◎소	○○○○◎소	부
			2022-01-07	-	-	-	♡♡♡♡과	○○○○◎소	○○○○◎소	부
			2022-05-30	-	-	-	♡♡♡♡과	◀◀◀◀과 ▼▼◀◀지소 (♡♡♡♡침터)	♡♡♡♡과 (♡♡♡♡센터)	부
			2022-07-13	-	-	-	♡♡♡♡과	◀◀◀◀과 ▼▼◀◀지소 (♡♡♡♡침터)	♡♡♡♡과 (♡♡♡♡센터)	부
			2022-08-22	-	-	-	♡♡♡♡과	♡♡♡♡과 (♡♡♡♡센터)	◀◀◀◀과 ▼▼◀◀지소 (♡♡♡♡침터)	부
			2022-09-21	-	-	-	♡♡♡♡과	♡♡♡♡과 (♡♡♡♡센터)	◀◀◀◀과 ▼▼◀◀지소 (♡♡♡♡침터)	부
			2022-10-19	-	-	-	♡♡♡♡과	◀◀◀◀과 ▼▼◀◀지소 (♡♡♡♡침터)	♡♡♡♡과 (♡♡♡♡센터)	부
			2022-10-21	-	-	-	♡♡♡♡과	♡♡♡♡과 (♡♡♡♡센터)	♡♡♡♡과 (♡♡♡♡센터)	부
			2022-11-07	-	-	-	♡♡♡♡과	◀◀◀◀과 ▼▼◀◀지소 (♡♡♡♡침터)	♡♡♡♡과 (♡♡♡♡센터)	부
			2022-11-24	-	-	-	♡♡♡♡과	♡♡♡♡과 (♡♡♡♡센터)	◀◀◀◀과 ▼▼◀◀지소 (♡♡♡♡침터)	부
			2022-12-22	-	-	-	♡♡♡♡과	◀◀◀◀과 ▼▼◀◀지소 (♡♡♡♡침터)	♡♡♡♡과 (♡♡♡♡센터)	부
			2023-01-04	-	-	-	♡♡♡♡과	♡♡♡♡과 (♡♡♡♡센터)	◀◀◀◀과 ▼▼◀◀지소 (♡♡♡♡침터)	부
2023-01-09	-	-	-	♡♡♡♡과	♡♡♡♡과 (♡♡♡♡센터)	◀◀◀◀과 ▼▼◀◀지소 (♡♡♡♡침터)	부			
2023-01-10	-	-	-	♡♡♡♡과	♡♡♡♡과 (♡♡♡♡센터)	◀◀◀◀과 ▼▼◀◀지소 (♡♡♡♡침터)	부			
124	▣▣▣▣	♡♡♡♡ ♡♡♡♡ 마급	2022-01-03	-	-	-	♡♡♡♡과	○○○○◎소	○○○○◎소	부
			2022-01-03	-	-	-	♡♡♡♡과	○○○○◎소	○○○○◎소	부

연번	대상자	직급	일시	시간	단가	지급액	당시 근무지	출근장소	퇴근장소	출장등록부
			2022-01-04	-	-	-	♡♡♡♡과	○○○○◎소	○○○○◎소	부
			2022-01-04	-	-	-	♡♡♡♡과	○○○○◎소	○○○○◎소	부
			2022-01-05	-	-	-	♡♡♡♡과	○○○○◎소	○○○○◎소	부
			2022-01-05	-	-	-	♡♡♡♡과	○○○○◎소	○○○○◎소	부
			2022-01-06	-	-	-	♡♡♡♡과	○○○○◎소	○○○○◎소	부
			2022-01-07	-	-	-	♡♡♡♡과	○○○○◎소	○○○○◎소	부
			2022-01-07	-	-	-	♡♡♡♡과	○○○○◎소	○○○○◎소	부
			2022-01-10	-	-	-	♡♡♡♡과	○○○○◎소	○○○○◎소	부
			2022-04-13	-	-	-	♡♡♡♡과	○○○○◎소	○○○○◎소	부
			2022-07-13	-	-	-	♡♡♡♡과	◀◀◀과 ▼▼▼지소 (♡♡♡♡센터)	♡♡♡♡과 (♡♡♡♡센터)	부
			2022-08-22	-	-	-	♡♡♡♡과	♡♡♡♡과 (♡♡♡♡센터)	◀◀◀과 ▼▼▼지소 (♡♡♡♡센터)	부
			2022-09-28	-	-	-	♡♡♡♡과	◀◀◀과 ▼▼▼지소 (♡♡♡♡센터)	♡♡♡♡과 (♡♡♡♡센터)	부
			2022-10-19	-	-	-	♡♡♡♡과	◀◀◀과 ▼▼▼지소 (♡♡♡♡센터)	♡♡♡♡과 (♡♡♡♡센터)	부
			2022-10-20	-	-	-	♡♡♡♡과	◀◀◀과 ▼▼▼지소 (♡♡♡♡센터)	♡♡♡♡과 (♡♡♡♡센터)	부
2022-11-07	-	-	-	♡♡♡♡과	◀◀◀과 ▼▼▼지소 (♡♡♡♡센터)	♡♡♡♡과 (♡♡♡♡센터)	부			
2023-01-10	-	-	-	♡♡♡♡과	♡♡♡♡과 (♡♡♡♡센터)	◀◀◀과 ▼▼▼지소 (♡♡♡♡센터)	부			
125	▣▣▣▣	▣▣▣7	2022-01-01	4	11,130	44,520	♡♡♡♡과	<1☞◎소	<1☞◎소	부
126	▣▣▣▣	▣▣▣7	2022-01-07	1	11,130	11,130	◀◀◀과	◀◀◀과 ▼▼▼지소	○○○○◎소	부
127	↑↑↑	♨♨♨사	2022-03-04	2	10,888	21,770	♨♨♨♨♨♨ ♨♨♨♨♨과	♨♨♨♨♨♨ ♨♨♨♨♨과	◎◎◎♨◎소	부
			2022-03-31	4	10,888	43,550	♨♨♨♨♨♨ ♨♨♨♨♨과	♨♨♨♨♨♨ ♨♨♨♨♨과	▲▲2	부
			2022-04-28	3	10,888	32,660	♨♨♨♨♨♨ ♨♨♨♨♨과	♨♨♨♨♨♨ ♨♨♨♨♨과	▲▲2	부
			2022-05-02	2	10,888	21,770	♨♨♨♨♨♨ ♨♨♨♨♨과	♨♨♨♨♨♨ ♨♨♨♨♨과	▲▲2	부
			2022-05-08	4	10,888	43,550	♨♨♨♨♨♨ ♨♨♨♨♨과	◎◎◎♨	♨♨♨♨♨♨ ♨♨♨♨♨과	부
			2022-05-09	0	10,888	0	♨♨♨♨♨♨ ♨♨♨♨♨과	♨♨♨♨♨♨ ♨♨♨♨♨과	◎◎◎♨	부
			2022-10-08	4	10,888	43,550	♨♨♨♨♨♨ ♨♨♨♨♨과	○○○	♨♨♨♨♨♨ ♨♨♨♨♨과	부
128	●●●	♨♨♨사	2022-03-31	1	10,888	10,880	♨♨♨♨♨♨ ♨♨♨♨♨과	♨♨♨♨♨♨ ♨♨♨♨♨과	▲▲2	부
129	▲▲▲	♨♨♨사	2022-04-14	-	11,619	-	♨♨♨♨♨♨ ♨♨♨♨♨과	♨♨♨♨♨♨ ♨♨♨♨♨과	◎◎◎×♨♨	부
130	▼▼▼	♨♨6	2022-05-07	4	10,841	43,360	<1☞◎소	◎◎◎♨♨	<1☞◎소	부
131	◎◎◎	♨♨♨사	2022-05-07	4	11,619	46,470	♨♨♨♨♨♨ ♨♨♨♨♨과	♨♨♨♨♨♨ ♨♨♨♨♨과	▲▲▲◎소	부
			2022-05-11	-	11,619	-	♨♨♨♨♨♨ ♨♨♨♨♨과	♨♨♨♨♨♨ ♨♨♨♨♨과	○○○○◎소	부
132	■	◆◆6	2022-05-07	4	12,321	49,280	▲▲▲	▲▲▲◎소	▲▲	부
			2022-07-31	4	12,321	49,280	▲▲▲과	★★★★과 (◇◇♨♨ 지하층◎실)	▲▲▲과(수청)	부
			2022-10-08	4	12,321	49,280	▲▲▲과	▲▲▲과 (◎◎◎♨♨)	▲▲▲과 (◎◎◎♨♨)	부



연번	대상자	직급	일시	시간	단가	지급액	당시 근무지	출근장소	퇴근장소	출장등록여부
144	■■■■	■■■6	2022-03-08	1	12,321	12,320	■■■사업소	▲▲	▲▲	부
			2022-05-05	4	12,321	49,280	■■■사업소	▲▲	▲▲	부
			2022-05-07	4	12,321	49,280	■■■사업소	▲▲	▲▲	부
145	■■■■■	■■■7	2022-01-15	1	11,130	11,130	■■■과	○○○○○소	○○○○○소	부
146	■■■■■	■■■7	2022-02-12	4	9,992	39,960	■■■과	■■■과	▼▼▲◀◀소	부
			2022-02-23	3	9,992	29,970	■■■과	■■■과	▼▼▲◀◀소	부
			2022-03-05	1	9,992	9,990	■■■과	■■■과	▼▼▲◀◀소	부
147	■■■■■	◆◆9	2022-06-01	4	9,160	36,640	■■■과	■■■과	○○○▲▲관	부
148	■■■■■	▲▲6	2022-01-02	4	12,321	49,280	○○○○○과	○○○○○소	○○○○○소	부
149	■■■■■	◆◆6	2022-08-07	4	12,321	49,280	○○○○○소	○○○○○소	●●과	부
150	▲▲▲	▲▲6	2022-01-08	4	12,321	49,280	▲▲▲▲▲▲ ▲▲○○과	○○○○◇▲▲	○○○○◇▲▲	부
			2022-01-09	4	12,321	49,280	▲▲▲▲▲▲ ▲▲○○과	▲▲▲▲▲▲ ▲▲○○과	○○○○▲○○소	부
			2022-01-15	4	12,321	49,280	▲▲▲▲▲▲ ▲▲○○과	○○○○◇▲▲	○○○○◇▲▲	부
			2022-01-21	1	12,321	12,320	▲▲▲▲▲▲ ▲▲○○과	▲▲▲▲▲▲ ▲▲○○과	○○○○◇▲▲	부
			2022-02-12	4	12,321	49,280	▲▲▲▲▲▲ ▲▲○○과	▲▲▲▲▲▲ ▲▲○○과	○○○○◇▲▲	부
			2022-02-26	4	12,321	49,280	▲▲▲▲▲▲ ▲▲○○과	▲▲▲▲▲▲ ▲▲○○과	○○○○◇▲▲	부
			2022-03-05	4	12,321	49,280	▲▲▲▲▲▲ ▲▲○○과	▲▲▲▲▲▲ ▲▲○○과	○○○○◇▲▲	부
			2022-03-25	1	12,321	12,320	▲▲▲▲▲▲ ▲▲○○과	▲▲▲▲▲▲ ▲▲○○과	○○○○◇▲▲	부
			2022-03-26	4	12,321	49,280	▲▲▲▲▲▲ ▲▲○○과	○○○○◇▲▲	○○○○◇▲▲	부
			2022-04-30	4	12,321	49,280	▲▲▲▲▲▲ ▲▲○○과	○○○○○소	○○○○◇▲▲	부
			2022-05-02	1	12,321	12,320	▲▲▲▲▲▲ ▲▲○○과	▲▲▲▲▲▲ ▲▲○○과	○○○○◇▲▲	부
			2022-05-07	4	12,321	49,280	▲▲▲▲▲▲ ▲▲○○과	▲▲▲▲▲▲ ▲▲○○과	○○○○◇▲▲	부
			2022-05-08	4	12,321	49,280	▲▲▲▲▲▲ ▲▲○○과	○○○○◇▲▲	▲▲▲▲▲▲ ▲▲○○과	부
			2022-05-21	4	12,321	49,280	▲▲▲▲▲▲ ▲▲○○과	○○○○◇▲▲	○○○○◇▲▲	부
151	▼▼▼	□□□6	2022-05-05	4	12,321	49,280	○○○○○소	○○○▲▲관	▲▲	부
152	○○○	◆◆9	2022-01-01	4	9,160	36,640	○○○○○소	○○○○○소	▲▲	부
			2022-01-02	4	9,160	36,640	○○○○○소	▲▲	▲▲	부
			2022-01-04	3	9,160	27,480	○○○○○소	○○○○○소	▲▲	부
			2022-01-06	3	9,160	27,480	○○○○○소	○○○○○소	▲▲	부
			2022-01-11	3	9,160	27,480	○○○○○소	○○○○○소	▲▲	부
			2022-01-15	4	9,160	36,640	○○○○○소	○○○○○소	▲▲	부
			2022-02-08	2	9,160	18,320	○○○○○소	○○○○○소	▲▲	부
			2022-05-05	4	9,160	36,640	○○○○○소	○○○▲▲관	▲▲	부
153	■■■	▲▲9	2022-03-04	2	9,160	18,320	○○○○○소	○○○○○소	▲▲	부
			2022-03-16	2	9,160	18,320	○○○○○소	○○○○○소	▲▲	부
			2022-03-20	4	9,160	36,640	○○○○○소	○○○○○소	▲▲	부
			2022-04-13	3	9,160	27,480	○○○○○소	○○○○○소	▲▲	부
154	▲▲▲	◆◆9	2022-03-02	-	9,160	-	○○○○○소	▲▲	○○○○○소	부
155	▲▲▲	▲▲6	2022-01-08	4	12,321	49,280	▲▲▲▲▲▲ ▲▲○○과	○○○○○소	▲▲▲▲▲▲ ▲▲○○과	부
156	▽▽▽	☆☆9	2022-06-11	4	9,160	36,640	▽▽과	▽▽과	▲▲관 당직실	부
157	▼▼▼	▲▲6	2022-05-08	4	12,321	49,280	▽▽과	○○○○◇▲▲	○○○○◇▲▲	부
158	☆☆☆	■■■6	2022-01-20	-	12,321	-	※※※	※※※	▲▲▲▲▲▲ 본관	부
159	★★★	▲▲7	2022-03-15	1	11,130	11,130	★★★★★과	★★★★★과	▲▲	부
			2022-05-21	1	11,130	11,130	★★★★★과	○○○	○○○	부
160	○○○	◆◆9	2022-04-08	1	9,160	9,160	◇◇◇◇과	▲▲	○○○○◇▲▲	부
			2022-04-09	4	9,160	36,640	◇◇◇◇과	○○○○◇▲▲	○○○○◇▲▲	부
			2022-05-07	4	9,160	36,640	◇◇◇◇과	▲▲	○○○	부

연번	대상자	직급	일시	시간	단가	지급액	당시 근무지	출근장소	퇴근장소	출장등록여부
161	●●●	◆◆8	2022-05-08	4	9,160	36,640	◇◇◇◇과	○○○▲▲관	○○○▲▲관	부
			2022-01-03	1	9,992	9,990	※※※	※※※	○○○◇◇◇	부
			2022-01-09	-	9,992	-	※※※	○○○◇◇◇	-	부
162	○○○	<17	2022-07-16	2	11,130	22,260	▲▲과	▲▲과	※※※	부
163	◇◇◇	♠♠9	2022-03-05	4	9,160	36,640	※※※	♠♠♠♠♠♠ 본관	♠♠♠♠♠♠ 본관	부
			2022-03-20	3	9,160	27,480	※※※	♠♠♠♠♠♠ 본관	♠♠♠♠♠♠ 본관	부
			2022-03-29	2	9,160	18,320	※※※	♠♠♠♠♠♠ 본관	♠♠♠♠♠♠ 본관	부
			2022-03-30	-	9,160	-	※※※	※※※	♠♠♠♠♠♠ 본관	부
164	◆◆◆	◆◆6	2022-02-10	2	12,321	24,640	◀◀소 ▶▶◆◆과	○○○◎◎소	◀◀소	부
			2022-02-16	2	12,321	24,640	◀◀소 ▶▶◆◆과	◀◀소	○○○◎◎소	부
			2022-02-23	2	12,321	24,640	◀◀소 ▶▶◆◆과	◀◀소	○○○◎◎소	부
			2022-02-24	2	12,321	24,640	◀◀소 ▶▶◆◆과	◀◀소	○○○◎◎소	부
			2022-02-25	2	12,321	24,640	◀◀소 ▶▶◆◆과	◀◀소	○○○◎◎소	부
			2022-02-28	2	12,321	24,640	◀◀소 ▶▶◆◆과	○○○◎◎소	◀◀소	부
			2022-03-03	3	12,321	36,960	◀◀소 ▶▶◆◆과	◀◀소	○○○◎◎소	여
			2022-03-04	2	12,321	24,640	◀◀소 ▶▶◆◆과	◀◀소	○○○◎◎소	여
			2022-03-07	1	12,321	12,320	◀◀소 ▶▶◆◆과	◀◀소	○○○◎◎소	여
			2022-03-08	1	12,321	12,320	◀◀소 ▶▶◆◆과	◀◀소	○○○◎◎소	부
			2022-03-10	2	12,321	24,640	◀◀소 ▶▶◆◆과	◀◀소	○○○◎◎소	여
			2022-03-11	1	12,321	12,320	◀◀소 ▶▶◆◆과	○○○◎◎소	◀◀소	여
			2022-03-14	1	12,321	12,320	◀◀소 ▶▶◆◆과	◀◀소	○○○◎◎소	여
			2022-03-15	2	12,321	24,640	◀◀소 ▶▶◆◆과	◀◀소	○○○◎◎소	여
			2022-03-17	2	12,321	24,640	◀◀소 ▶▶◆◆과	◀◀소	○○○◎◎소	부
			2022-03-18	1	12,321	12,320	◀◀소 ▶▶◆◆과	◀◀소	○○○◎◎소	여
			2022-03-21	2	12,321	24,640	◀◀소 ▶▶◆◆과	○○○◎◎소	◀◀소	부
			2022-03-22	2	12,321	24,640	◀◀소 ▶▶◆◆과	○○○◎◎소	◀◀소	여
2022-03-23	2	12,321	24,640	◀◀소 ▶▶◆◆과	◀◀소	○○○◎◎소	부			
2022-04-08	2	12,321	24,640	◀◀소 ▶▶◆◆과	◀◀소	○○○◎◎소	부			
165	≡≡≡	♣♣♣7	2022-05-07	4	11,130	44,520	△△△	▼▼♣청	▼▼♣청	부
			2022-05-08	4	11,130	44,520	△△△	▼▼♣청	▼▼♣청	부
166	≡≡≡≡	◆◆9	2022-05-07	4	9,160	36,640	<1<♣	○○○◇◇◇♣♣	○○○◇◇◇♣♣	부
			2022-05-08	4	9,160	36,640	<1<♣	○○○◇◇◇♣♣	○○○◇◇◇♣♣	부
167	≡≡≡≡	◆◆7	2022-05-05	4	11,130	44,520	○○○	▲▲	▲▲	부
			2022-05-08	4	11,130	44,520	○○○	▲▲	▲▲	부
168	≡≡≡≡	◆◆8	2022-03-15	1	9,160	9,160	○○○	▲▲	▲▲	부
			2022-04-09	4	9,160	36,640	○○○	○○○◇◇◇♣♣	○○○◇◇◇♣♣	부
			2022-05-08	4	9,160	36,640	○○○	○○○◇◇◇♣♣	○○○◇◇◇♣♣	부
169	↑↑↑↑	◆◆7	2022-05-07	4	11,130	44,520	○○○	▲▲	▲▲	부
170	●●●	♣♣8	2022-01-02	4	9,992	39,960	○○○	▲▲	▲▲	부
			2022-01-03	1	9,992	9,990	○○○	▲▲	▲▲	부
171	▲▲▲	☆☆6	2022-04-23	4	12,321	49,280	♡♡♣	♡♡♣	▲▲	부
			2022-05-05	4	12,321	49,280	♡♡♣	▲▲	▲▲	부
			2022-05-08	4	12,321	49,280	♡♡♣	▲▲	▲▲	부
172	▼▼▼	<16	2022-01-08	4	12,321	49,280	▲▲▲▲과	△△△	△△△	부
			2022-01-09	4	12,321	49,280	▲▲▲▲과	△△△	△△△	부
			2022-01-15	4	12,321	49,280	▲▲▲▲과	△△△	△△△	부
			2022-01-22	4	12,321	49,280	▲▲▲▲과	△△△	△△△	부
			2022-01-23	4	12,321	49,280	▲▲▲▲과	▲▲	△△△	부
			2022-02-06	4	12,321	49,280	▲▲▲▲과	▲▲	▲▲	부
			2022-02-07	2	12,321	24,640	▲▲▲▲과	▲▲	▲▲	부
			2022-02-11	2	12,321	24,640	▲▲▲▲과	▲▲	△△△	부
			2022-02-12	4	12,321	49,280	▲▲▲▲과	△△△	△△△	부
			2022-02-13	4	12,321	49,280	▲▲▲▲과	△△△	△△△	부
			2022-02-14	-	12,321	-	▲▲▲▲과	▲▲	▲▲	부
			2022-02-15	1	12,321	12,320	▲▲▲▲과	▲▲	▲▲	부
2022-02-16	2	12,321	24,640	▲▲▲▲과	▲▲	▲▲	부			

연번	대상자	직급	일시	시간	단가	지급액	당시 근무지	출근장소	퇴근장소	출장등록여부
			2022-02-20	4	12,321	49,280	▲▲▲▲과	△△△	△△△	부
173	●●●	♁♁7	2022-05-08	4	11,130	44,520	○○○	♁♁♁♁♁♁	♁♁♁♁♁♁	부
174	■	◁◁8	2022-01-20	4	9,992	39,960	○○○	▲▲	▲▲	부
			2022-01-21	4	9,992	39,960	○○○	▲▲	▲▲	부
			2022-05-08	4	9,992	39,960	○○○	▲▲	▲▲	부
175	△△△	▨▨▨	2022-01-08	4	11,130	44,520	○○○	○○○♁♁♁	○○○♁♁♁	부
			2022-01-15	4	11,130	44,520	○○○	○○○♁♁♁	○○○♁♁♁	부
			2022-01-22	4	11,130	44,520	○○○	○○○♁♁♁	○○○♁♁♁	부
			2022-01-31	3	11,130	33,390	○○○	○○○♁♁♁	○○○♁♁♁	부
			2022-02-12	4	11,130	44,520	○○○	○○○♁♁♁	○○○♁♁♁	부
			2022-02-26	4	11,130	44,520	○○○	○○○♁♁♁	○○○♁♁♁	부
			2022-03-26	3	11,130	33,390	○○○	○○○♁♁♁	○○○♁♁♁	부
			2022-05-01	4	11,130	44,520	○○○	○○○×××♁♁	○○○×××♁♁	부
			2022-05-08	4	11,130	44,520	○○○	○○○♁♁♁	○○○♁♁♁	부
			2022-05-15	4	11,130	44,520	○○○	○○○×××♁♁	○○○×××♁♁	부
176	▲▲▲	♁♁♁6	2022-10-12	-	12,321	-	♁♁♁○○과	▽▽과	♁♁♁○○과	부
177	▽▽▽	◆◆7	2022-01-07	1	11,130	11,130	▽▽과	○○○○○○소	○○○○○○소	부
			2022-05-07	4	11,130	44,520	▽▽과	○○○○○○소	▽▽♁♁관	부
			2022-05-14	3	11,130	33,390	▽▽과	▽▽과	○○○○○○소	부
178	▽▽▽	◆◆7	2022-05-05	4	11,130	44,520	□□♁	□□♁	○○○×××♁♁	부
179	☆☆☆	◆◆9	2022-10-08	4	9,160	36,640	□□♁	▲▲▲▲과	○○○♁♁♁○○실	부
180	★★★	♁♁8	2022-10-22	3	9,992	29,970	□□♁	♁♁○○과	□□♁	부
181	○○○	☆☆9	2022-05-19	-	9,160	-	□□♁	□□♁	▲▲	부
182	●●●	♁♁6	2022-05-08	4	12,321	49,280	◁◁♁	◁◁♁○○소	▲▲	부
			2022-01-01	3	11,130	33,390	◁◁♁	○○○×××♁♁	○○○×××♁♁	부
183	○○○	◆◆7	2022-01-02	4	11,130	44,520	◁◁♁	○○○×××♁♁	○○○×××♁♁	부
			2022-05-07	4	9,992	39,960	◁◁♁	○○○♁♁♁	◁◁♁○○소	부
184	◇◇◇	☆☆8	2022-05-08	4	9,992	39,960	◁◁♁	○○○♁♁♁	○○○×××♁♁	부
			2022-05-08	4	9,992	39,960	◁◁♁	▲▲	○○○×××♁♁	부
185	◆◆◆	♁♁♁♁8	2022-05-08	4	9,992	39,960	◁◁♁	▲▲	○○○×××♁♁	부
186	≡≡≡	◆◆9	2022-05-08	4	9,160	36,640	◁◁♁	▲▲	▲▲	부
187	▨▨▨▨	◆◆6	2022-05-07	4	12,321	49,280	◁◁♁	○○○×××♁♁	○○○×××♁♁	부
			2022-05-08	4	12,321	49,280	◁◁♁	◁◁♁○○소	○○○×××♁♁	부
188	▨▨▨▨	□□□6	2022-05-08	4	11,130	44,520	◁◁♁	▲▲	○○○×××♁♁	부
			2022-10-08	3	12,321	36,960	@@@@실	☆☆○○장	@@@@실	부
189	▨▨▨	◆◆6	2022-11-19	3	12,321	36,960	@@@@실	☆☆○○장	@@@@실	부
			2022-06-25	-	12,321	-	▲▲▲▲과	▲▲▲▲과	○○○♁♁♁♁관광지	부
190	↑↑↑	◆◆6	2022-06-25	-	12,321	-	▲▲▲▲과	▲▲▲▲과	○○○♁♁♁♁관광지	부
191	●●●	◆◆8	2023-02-05	8	10,162	81,290	◁◁♁	◁◁♁○○소	◁◁♁○○소	부
192	▲▲▲	♁♁6	2022-01-02	4	12,321	49,280	♡♡♁	♁♁♁♁♁♁본관	♁♁♁♁♁♁본관	부
193	▽▽▽	◆◆7	2022-03-15	-	11,130	-	▽▽과	-	○○○▲▲관	부
			2022-04-09	4	11,130	44,520	▽▽과	▲▲	○○○▲▲관	부
			2022-04-10	4	11,130	44,520	▽▽과	○○○▲▲관	▲▲	부
194	○○○	◆◆7	2022-04-09	-	11,130	-	◇◇◇◇과	○○○×××♁♁	○○○×××♁♁	부
195	■	◆◆6	2022-05-08	4	12,321	49,280	◁◁♁	○○○×××♁♁	○○○×××♁♁	부
196	△△△	◆◆8	2022-01-18	3	9,992	29,970	▲▲▲▲과	▲▲	***	부
			2022-03-02	4	9,992	39,960	◁◁♁	◁◁♁	▲▲	부
			2022-03-04	3	9,992	29,970	◁◁♁	◁◁♁	▲▲	부
			2022-05-05	4	9,992	39,960	◁◁♁	◁◁♁	▲▲	부
			2022-01-08	4	11,130	44,520	◁◁♁	▲▲	◁◁♁	부
197	▲▲▲	◁◁7	2022-01-09	4	11,130	44,520	◁◁♁	▲▲	◁◁♁	부
			2022-01-17	3	11,130	33,390	◁◁♁	◁◁♁	▲▲	부
			2022-01-22	-	11,130	-	◁◁♁	▲▲	◁◁♁	부
			2022-01-24	3	11,130	33,390	◁◁♁	◁◁♁	▲▲	부
			2022-01-25	2	11,130	22,260	◁◁♁	◁◁♁	▲▲	부
198	▽▽▽	◆◆9	2023-02-06	3	9,620	28,860	◁◁♁	◁◁♁	▶▶▶▶과	부

※ 고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의료급여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고령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고령군 ■■■■과에서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통해 의료급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1.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상실 관리 소홀

「의료급여법」 제16조, 제17조에 따르면 수급자의 소득·재산상황·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고,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자의 거부가 있는 경우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료급여의 변경 혹은 중지 시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의료급여사업 안내(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 소득·재산 증가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상실 통보서를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취득, 변경,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9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다음 [표 1]과 같이 386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 초과 등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담당자의 관리 소홀로 최대 246일까지 자격상실 처리가 지연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의료급여 자격상실 처리 지연 현황

연도	의료급여 수급권 지연처리 인원	지연 일수	지연 사유	비 고
계	386명			
2019년(11월부터)	♣♣♣ 외 25명	최대 35일	담당자 전산처리 지연	소득인정액 초과, 연령 초과 등
2020년	◎◎◎ 외 120명	최대 103일	담당자 전산처리 지연	
2021년	◆◆◆ 외 143명	최대 97일	담당자 전산처리 지연	
2022년	▣▣▣ 외 94명	최대 246일	담당자 전산처리 지연	

※ 고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다음 [표 2]와 같이 소득인정액 초과, 취업 등 의료급여 자격 중지(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 등 54명의 의료급여 상실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동안 363회에 이르는 의료급여 진료가 이루어져 32,667천 원의 진료비용을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의료급여 자격상실 지연처리로 인한 의료급여 기금 부담액 등 현황

(단위 : 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보호 종별	자격상실 사유 발생일	실제 처리 일자	처 리 지연일	진료 횟수	기관부담액 (의료급여기금)
계	54명						363회	32,667,910
1	●○○	◆◆◆◆◆◆	1 종	2019.11.08	2019.12.13	35일	11회	438,450
2	☆☆☆	◆◆◆◆◆◆	1 종	2019.11.08	2019.12.13	35일	2회	897,970
3	★★★	◆◆◆◆◆◆	1 종	2019.11.08	2019.12.13	35일	6회	141,760
4	○○○	◆◆◆◆◆◆	1 종	2019.11.22	2019.12.02	10일	1회	26,700
5	●●●	◆◆◆◆◆◆	1 종	2019.11.27	2019.12.05	8일	1회	24,630
6	◎◎◎	◆◆◆◆◆◆	1 종	2019.11.27	2019.12.05	8일	2회	21,540
7	◇◇◇	◆◆◆◆◆◆	2 종	2019.12.28	2020.01.02	5일	2회	37,100
8	◆◆◆	◆◆◆◆◆◆	2 종	2019.12.28	2020.01.02	5일	2회	35,650
9	□□□	◆◆◆◆◆◆	1 종	2020.01.19	2020.04.06	78일	2회	107,500
10	△△△	◆◆◆◆◆◆	2 종	2020.01.27	2020.02.04	8일	1회	85,410
11	▽▽▽	◆◆◆◆◆◆	1 종	2020.02.24	2020.03.07	12일	1회	9,730
12	▼▼▼	◆◆◆◆◆◆	1 종	2020.05.02	2020.05.07	5일	1회	34,710

연번	성명	생년월일	보호 종별	자격상실 사유 발생일	실제 처리 일자	처 리 지연일	진료 횟수	기관부담액 (의료급여기금)
13	<<<	◆◆◆◆◆	1 종	2020.05.22	2020.06.17	26일	2회	118,570
14	▣▣▣	◆◆◆◆◆	1 종	2020.05.27	2020.06.10	14일	2회	238,110
15	●●●	◆◆◆◆◆	1 종	2020.07.24	2020.08.24	31일	5회	818,170
16	☆☆☆	◆◆◆◆◆	2 종	2020.08.01	2020.08.07	6일	2회	286,510
17	★★★	◆◆◆◆◆	1 종	2020.08.13	2020.08.24	11일	1회	12,280
18	○○○	◆◆◆◆◆	1 종	2020.08.21	2020.09.18	28일	1회	105,810
19	●●●	◆◆◆◆◆	1 종	2020.08.24	2020.09.01	8일	2회	97,450
20	◎◎◎	◆◆◆◆◆	1 종	2020.08.26	2020.10.19	54일	3회	87,390
21	◇◇◇	◆◆◆◆◆	1 종	2020.08.31	2020.10.16	46일	62회	5,189,820
22	◆◆◆	◆◆◆◆◆	1 종	2020.09.09	2020.09.15	6일	6회	132,700
23	□□□	◆◆◆◆◆	2 종	2020.09.30	2020.10.05	5일	2회	32,080
24	△△△	◆◆◆◆◆	2 종	2020.10.16	2020.10.22	6일	5회	70,930
25	▽▽▽	◆◆◆◆◆	1 종	2020.11.20	2021.02.18	90일	13회	421,730
26	▼▼▼	◆◆◆◆◆	1 종	2020.11.20	2021.02.18	90일	1회	21,170
27	<<<	◆◆◆◆◆	1 종	2020.12.28	2021.02.19	53일	13회	276,500
28	▣▣▣	◆◆◆◆◆	1 종	2021.01.22	2021.02.10	19일	2회	35,780
29	●●●	◆◆◆◆◆	1 종	2021.02.09	2021.03.12	31일	4회	111,690
30	☆☆☆	◆◆◆◆◆	1 종	2021.02.20	2021.03.18	26일	9회	340,250
31	★★★	◆◆◆◆◆	1 종	2021.02.22	2021.03.12	18일	2회	30,970
32	○○○	◆◆◆◆◆	2 종	2021.03.12	2021.03.15	3일	3회	117,590
33	●●●	◆◆◆◆◆	2 종	2021.04.20	2021.04.23	3일	3회	124,660
34	◎◎◎	◆◆◆◆◆	1 종	2021.07.13	2021.07.26	13일	1회	45,410
35	◇◇◇	◆◆◆◆◆	1 종	2021.07.16	2021.07.26	10일	2회	77,800
36	◆◆◆	◆◆◆◆◆	1 종	2021.07.29	2021.08.11	13일	7회	169,120
37	□□□	◆◆◆◆◆	1 종	2021.08.07	2021.08.18	11일	4회	151,940
38	△△△	◆◆◆◆◆	1 종	2021.08.07	2021.08.18	11일	2회	57,460
39	▽▽▽	◆◆◆◆◆	2 종	2021.08.12	2021.08.18	6일	4회	93,700
40	▼▼▼	◆◆◆◆◆	1 종	2021.10.20	2021.11.11	22일	10회	159,730
41	●●●	◆◆◆◆◆	2 종	2021.11.11	2021.11.23	12일	2회	87,660
42	☆☆☆	◆◆◆◆◆	1 종	2021.11.30	2021.12.13	13일	5회	287,340
43	★★★	◆◆◆◆◆	1 종	2021.12.11	2021.12.15	4일	1회	42,450
44	○○○	◆◆◆◆◆	1 종	2021.12.13	2021.12.22	9일	3회	242,490
45	●●●	◆◆◆◆◆	1 종	2021.12.14	2022.02.18	66일	7회	283,280
46	◎◎◎	◆◆◆◆◆	2 종	2021.12.28	2022.01.10	13일	1회	15,970
47	◇◇◇	◆◆◆◆◆	1 종	2022.02.01	2022.10.05	246일	64회	11,966,660
48	◆◆◆	◆◆◆◆◆	2 종	2022.03.13	2022.04.13	31일	26회	6,577,230
49	□□□	◆◆◆◆◆	1 종	2022.03.22	2022.04.14	23일	1회	8,680
50	△△△	◆◆◆◆◆	1 종	2022.03.23	2022.03.30	7일	2회	207,770
51	▽▽▽	◆◆◆◆◆	1 종	2022.06.30	2022.07.20	20일	8회	377,900
52	▼▼▼	◆◆◆◆◆	2 종	2022.08.01	2022.12.14	135일	16회	333,910
53	<<<	◆◆◆◆◆	1 종	2022.09.20	2022.10.13	23일	7회	205,020
54	▣▣▣	◆◆◆◆◆	1 종	2022.09.22	2022.12.12	81일	15회	745,080

※ 고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 2. 의료급여 수급자 종별 변경 소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1종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8세 미만인 자, 65세 이상인 자 등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원의 구성원으로 명시하고 그 외의 수급자 등을 2종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의료급여법」 별표1 및 「의료급여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종별에 따라 다음 [표 3]과 같이 급여비용 부담에 차등을 두고 있으므로, 1종에서 2종 또는 2종에서 1종으로 수급자 자격이 변동된 경우 기존 의료급여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고 변경된 내용에 맞게 새로운 의료급여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변경 처리 전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환급신청 안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3] 종별 구분에 따른 수급권자 부담액 또는 부담률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mri, ct, pet 등 검사종류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따라서, 고령군 ㉸㉸㉸㉸과에서는 수급자 종별 변경 지연으로 기금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는 경우가 없도록 수급자 자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초과지급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규정에 따라 환급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과에서는 다음 [표 4]와 같이 의료급여 2종 수급자 ■■■ 등 8명이 근로능력상실로 의료급여 종별을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처리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 기준으로 최대 119일 지연하였고 그에 따라 환급금액 158,590원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환급하지 않고 있었다.

[표 4] 의료급여 종별변경 미처리 현황

(단위 : 원)

대 상 자			종 별 변 경			처 리 지 연 일	환 급 발생 금액	
성명	생년월일	선정일자	선정시 종별	적정 종별	사유			실제처리자
계	8명						158,590	
□□□	◆◆◆◆◆	2019.11.11	2종	1종	근로능력상실	2020.01.09	59일	1,940
●●●	◆◆◆◆◆	2020.04.08	2종	1종	근로능력상실	2020.08.05	119일	18,380
☆☆☆	◆◆◆◆◆	2020.05.07	2종	1종	근로능력상실	2020.08.14	99일	370
★★★	◆◆◆◆◆	2020.06.01	2종	1종	근로능력상실	2020.08.14	74일	220
○○○	◆◆◆◆◆	2020.07.01	2종	1종	근로능력상실	2020.08.18	48일	880
●●●	◆◆◆◆◆	2020.08.18	2종	1종	근로능력상실	2020.11.27	101일	62,940
☆☆☆	◆◆◆◆◆	2020.08.18	2종	1종	근로능력상실	2020.11.27	101일	5,360
★★★	◆◆◆◆◆	2022.08.04	2종	1종	근로능력상실	2022.11.21	109일	68,500

※ 고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 3.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속임수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고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고, 납부기한 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납부대상자가 재산이 없거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경우로 확인된 경우나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 등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급여법」 제19조, 「의료급여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비용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구상금),

납부하지 않을 시 구상금 청구의 소를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민사상 강제 집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1조 및 「민법」 제766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의 청구권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시효만료 6개월 내 「민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고령군 ㉸㉸㉸㉸과에서는 수급자의 속임수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 발생한 ‘부당이득금’ 과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비용을 받은 때 발생한 ‘구상금’ 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고, 납부대상자가 미납부 시 채권보전 조치(재산조회, 독촉, 압류 등)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다음 [표 5]과 같이 감사일 현재까지 미납된 부당이득금과 구상금 총 8건, 6,318,370원에 대하여 감사 기간 현재까지 채권보전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표 5] 미회수 부당이득금·구상금 현황 (징수율 56.6%)

(단위 : 원)

연번	구분	채무자	부과일	부과액	징수액	잔액	최종 채권보전 조치(일)	시효 경과월
계		8건		14,558,870	8,240,500	6,318,370		
	소계	4건		9,631,750	7,174,000	2,457,750		
1	부당이득금	▽▽▽	2008.05.30.	5,655,090	4,824,000	831,090	납부중	
2		▼▼▼	2018.03.28.	1,364,170	700,000	664,170	2019.06.21.	
3		●●●	2020.06.03.	2,048,990	1,650,000	398,990	납부중	
4		☆☆☆	2021.05.20.	563,500	0	563,500	2021.06.15.	
	소계	4건		4,927,120	1,066,500	3,860,620		
5	부당이득금	★★★	2016.08.23.	821,090	120,000	701,090	2019.06.21.	2021.08.
6		○○○	2016.08.23.	1,008,340	66,500	941,840	2019.06.21.	2021.08.
7		●●●	2016.08.23.	1,074,640	880,000	194,640	2019.06.21.	2021.08.
8	구상금	◎◎◎	2019.12.23.	2,023,050	0	2,023,050		2022.12.

※ 고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이러한 채권보전 조치 소홀로 인하여 위 [표 5]와 같이 총 4건, 3,860,620원의 경우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징수권이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으며, 다음 [표 6]의 기 경과된 16건, 27,231,500원과 함께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분도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6] 채권보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소멸시효 경과 현황

(단위 : 원)

연번	구분	채무자	부과일	부과액	징수액	잔액	최종 채권보전 조치(일)	시효 경과 여부
계		16건		33,118,950	5,887,450	27,231,500	-	
1	부당이득금	▽▽▽	1998.10.30.	670,000	0	670,000	2019.06.21.	여
2		▼▼▼	2003.05.28.	4,388,800	800,000	3,588,800	2019.06.21.	여
3		●○○	2003.05.28.	4,629,950	150,000	4,479,950	2019.06.21.	여
4		☆☆☆	2003.07.10.	655,890	325,890	330,000	2019.06.21.	여
5		★★★	2004.12.16.	3,206,540	600,000	2,606,540	2019.06.21.	여
6		○○○	2006.03.30.	4,612,740	0	4,612,740	2019.06.21.	여
7		●●●	2006.08.16.	527,450	0	527,450	2019.06.21.	여
8		○○○	2006.12.22.	1,283,410	500,000	783,410	2019.06.21.	여
9		◇◇◇	2010.09.13.	624,740	0	624,740	2019.06.21.	여
10		▽▽▽	2010.09.13.	648,880	0	648,880	2019.06.21.	여
11		▼▼▼	2010.11.12.	691,360	0	691,360	2019.06.21.	여
12		●○○	2011.07.07.	3,616,560	3,200,000	416,560	2019.06.21.	여
13	구상금	☆☆☆	2003.05.13.	1,977,010	0	1,977,010	2019.06.21.	여
14		★★★	2009.08.27.	3,048,830	0	3,048,830	2019.06.21.	여
15		○○○	2010.11.12.	761,560	311,560	450,000	2019.06.21.	여
16		●●●	2011.01.06.	1,775,230	0	1,775,230	2019.06.21.	여

※ 고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고령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의료급여 종별변경 미처리로 발생한 환급금(158,590원) 및 부당이득금 체납액(2,457,750원)에 대하여 환급 및 추징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관급자재 구매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소 관 청 고령군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고령군 ○○과는 다음 [표 1]와 같이 ㉡㉡과의 특허물품 수의계약요구 사유로 총 2건의 수의계약(계약금액 : 71,874천 원)을 체결하였다.

[표 1] 특허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천 원)

계약명 (물품특허번호)	계약상대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방법	수의계약사유
		계약일	완료일			
		합 계		71,874		
▣▣◆◆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자외선 소독설비 (제10-○○○○○○○○호)	(주)☆☆☆☆☆	'20.12.18.	'21.04.15.	36,234	1인 견적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 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
◇◇★★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자외선 소독설비 (제10-○○○○○○○○호)		'20.12.18.	'21.06.17.	35,640	1인 견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 하여 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에 따르면 특허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로 그 사유를 제한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 6. 10.) 제5장 제3절 4-나-4)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요청할 시에는 특수한 기술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는 사업부서가 계약부서에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 6. 10.)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용역·물품기타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령군에서는 특허물품을 관급자재로 구매할 경우 자재선정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한 심의회 등을 통해 제품선정결과서를 첨부하여 수의계약을 요구하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관급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의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유사한 특허등록을 하거나 대체·대용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체·대용품이 있는 경우 특허를 사유로 수의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추진하거나, 일반 경쟁 입찰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했다.

한편, 감사기간 동안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sup>3)</sup>에서 ‘자외선 소독설비’를 검색한 결과 다음 [표 2]와 같이 (주)☆☆☆☆☆ 외 업체가 유사한 특허등록을 한 것을 파악하였다.

[표 2] 유사 특허 등록 현황<sup>4)</sup>

연번	업체명 (홈페이지)	물품명	특허 등록번호 (등록일자)	제품설명(특허정보검색서비스)
1	(주)☆☆☆☆☆ (◇◇◇.◇◇◇.◇◇)	관로형 자외선소독장치	10-○○○○○○○○ (2009.11.7.)	자외선·미세기포를 이용한 소독·살균
2	(주)▽▽▽ (◇◇◇.◇◇◇.◇◇)	관로 밀폐형 중압 자외선소독설비	10-▼▼▼▼▼ (2009.11.26.)	자외선램프의 자외선 조사·살균
3	(주)▼▼▼▼▼ (◇◇◇.◇◇◇.◇◇)	관로형 자외선 소독기	10-■ ■ ■ ■ ■ (2010.11.8.)	자외선램프의 자외선 조사·살균
4	(주)○○○○○○○○ (◇◇◇.◇◇◇.◇◇)	관로형 자외선소독장치	10-●●●●●● (2018.11.21.)	와류발생을 이용한 자외선 소독·살균

3)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

4) 업체 홈페이지의 제품소개 등을 통해 유사제품 확인 등

또한, ㉠과 사업담당자의 경위 및 문답에 따르면 ‘대체·대용품 유무 검토 과정에서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특허제품이므로 다른 제품을 제조 설치할 경우 특허법 위반으로 오인하여 대체·대용품이 없는 것으로 검토 및 수의계약을 요구하게 되었고, 당시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자외선 소독설비 제품이 등재되지 않아 대체·대용품 유무를 검토하지 못하였고, 특허정보검색서비스 등을 잘 알지 못하였으며, 감사기간 동안 감리로부터 (주)☆☆☆☆ 등 비교 견적 3건<sup>5)</sup>을 받아 유사제품 중 (주)☆☆☆☆의 자외선 소독설비가 가격적 측면에서 경제적이었다’고 주장 하나, 사업담당자로서 유사 특허제품 유무 및 특허가 아닌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 등 조사·검토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 유사 특허 등록 업체의 자외선 소독설비 제품을 비교 검토할 경우 대체·대용품이 존재<sup>6)</sup>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과 계약팀장의 경위 및 문답에 따르면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한 유사 특허제품 등록업체, 나라장터종합쇼핑몰·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등을 통한 대체·대용품 유무 및 타 지자체의 자외선 소독설비 제조·설치 관련 나라장터 입찰 공고 내역 등’에 대해 ‘계약담당자가 검색 및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추측성 주장’과 단순히 ‘관급자재(특허)구매를 위한 대체·대용품 유무 확인 협조 요청’ 전국 시군구 공문<sup>7)</sup>을 시행하였다고 하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한 심의회를 통하여 관급자재를 선정 하지 않는 등 사실상 ㉠과의 수의계약 요구에 따라 관급자재가 결정되었음에도 ‘대체·대용품 없고 이 제품이 아니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과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5) 3건 비교 견적 현황

연번	견적작성일	업체명	품목명	규격	금액(단위:천 원)	비고(특허여부)
1	2017. 6. 2.	(주)☆☆☆☆(서울 소재)	자외선(UV)소독설비	40m3/hr	36,600	여
2	2017. 6. 2.	◎◎엔지니어링(인천 소재)	자외선(UV)소독설비	40m3/hr	40,000	부
3	2017. 6. 2.	□□엔지니어링(서울 소재)	자외선(UV)소독설비	40m3/hr	40,000	부

6) 2016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300(2015.7.24.)호)

\* 특허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통상실시권자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유사한 성능의 특허물품이 존재하고 이를 사용하더라도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또는 특허가 없는 물품을 사용하더라도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체품이나 대용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므로 입찰에 부쳐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따라서 특허물품에 통상실시권이 부여된 경우, 해당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입찰에 부쳐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7) 고령군 ○○과-28119(2020. 12. 15.)호, 결재자(담당자 ★★, 팀장 ◇◇◇, 과장 ○○○) / 2020. 12. 16. 기한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확인 대상 내역((주)☆☆☆☆, 자외선 소독설비)의 대체·대용품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음

수의계약을 하였다'는 이와 같은 주장도 타당하다 볼 수 없다.

이로 인해 고령군 ㉠㉠과는 위 특허물품인 자외선 소독설비는 하수종말 처리장의 최종방류수의 병원미생물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 발생방지 및 처리수의 위생적인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한 소독설비로서 특허(제10-0000000호, 2009.11.7.)를 획득한 제품으로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으며, 동 기술의 권리자인 (주)☆☆☆☆과 지방계약법<sup>8)</sup>에 따라 구매한다는 사유로 ㉠과에 수의계약을 요구하였고, 이에 ㉠과는 그 요구를 수용하여 부적정한 특허사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 조치할 사항 고령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8)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 : 특허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증명서 확인 소홀
소 관 청	고령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고령군 ○○과(이하 위 부서)에서는 각종 인쇄출판물 제작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하도록 되어 있고, 제품조달계약 전후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매 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각종 인쇄출판물 제작에 대하여는 그 추정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직접생산확인 조회<sup>9)</sup> 등 정보를 확인한 뒤 직접생산증명서<sup>10)</sup>를 소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각종 인쇄출판물 제작과

9)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http://www.smpp.go.kr))

10)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시장 내 입찰·계약 등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로써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관련하여 직접생산능력이 없는 사업자와 다음 [표]와 같이 부적정한 7건(계약금액 : 190,619천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직접생산증명서 미소지 사업자와 수의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연번	계약명	업체명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합 계			190,619	
1	고령★★△△△(♥♥♥권)인쇄	≡≡≡≡≡≡≡≡	2020.02.27.	14,117	
2	고령★★△△△(♥♥♥권)제작	≡≡≡≡≡≡≡≡	2020.04.17.	17,830	
3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고령★★△△△(♥♥♥권) 제작	≡≡≡≡≡≡≡≡	2020.05.21.	27,200	
4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고령★★△△△ 제작	≡≡≡≡≡≡≡≡	2020.06.25.	81,972	
5	고령★★△△△(♥♥♥권) 제작	≡≡≡≡≡≡≡≡	2020.12.29.	18,270	
6	◁◁고분군, 세계유산을 향하여 ▷▷본 발간	(주)♥♥♥♥♥	2020.06.02.	15,160	
7	관내 지도 인쇄	유유유유유유유유	2021.12.06.	16,070	

※ 고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고령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소 관 청 고령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고령군 ㉸㉸㉸㉸과(구 ㉸㉸㉸㉸과)에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 등에 따라 석유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사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는 법령상 허용된 영업범위와 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3조 제4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1] “행정처분기준” 1. 가, 다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석유판매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르고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등유 등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같은 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행정처분기준” 1. 라에 따르면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한 위반행위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하고 그 위반행위가 모두 사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3년 간 같은 행위로 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사업정지기간을 검토하여야 하고, 최종적으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1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 부서에서는 2019. 3. 6.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로부터 고령군 관내 석유판매업소 ♣♣♣♣(대표 ●●●)이 이동식판매차량을 이용하여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등유를 판매하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sup>11)</sup> 및 제10호<sup>12)</sup>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리고 행정처분 기간을 검토하면서 위 판매업소가 2017. 4. 13. 유사사례<sup>13)</sup>로 고발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감경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행정처분기준 합산 기간(4개월) 이내에서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사업정지 3개월)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다음 [표 1]과 같이 2019. 4. 1. 가중처분에 대하여는 검토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업정지 기간인 4개월보다 1개월이 짧은 3개월로 행정처분 하였다.

11) 등유를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판매

12)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13)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덤프차량에 연료로 주유

[표 1] 행정처분(영업정지) 부적정 내역

상호	위반내용	처분일	부적정 행정처분	정당 행정처분	비고
♣♣♣♣ (●●●●)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	2019. 4. 1.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4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호) 사업정지 3개월(1차)</li> <li>• (제10호) 사업정지 1개월(1차)</li> </ul>

## 2. 2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7조, 제8조, 제10조 제7항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사업정지처분 효과는 새로운 석유판매업자에게 승계되도록 되어 있다.

2019. 11. 27. ♣♣♣♣은 대표자를 ●●●●에서 △△△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같은 해 12. 2. 위 부서에서는 변경신고를 수리<sup>14)</sup>하였다.

그리고 위 부서에서는 2021. 3. 6.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로부터 고령군 관내 석유판매업소 ♣♣♣♣(대표 △△△)이 이동식판매차량을 이용하여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등유를 판매하는 것으로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경과실 등 처분 감경 사유가 아니므로 새로운 석유판매업자에게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및 위반행위 횟수 적용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을 합산 기간(7개월) 이내에서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사업정지 6개월)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다음 [표 2]와 같이 2021. 10. 20. 가중처분에 대하여는 검토하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업정지기간인 7개월보다 1개월이 짧은 6개월로 행정처분을 하였다.

14) 본 건 행정처분 검토보고서에는 2019. 11. 27. 석유판매업 변경신고 전 대표자의 위반 사항에 대해 고지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표 2] 행정처분(영업정지) 부적정 내역

상호	위반내용	처분일	부적정 행정처분	정당 행정처분	비고
♣♣♣♣ (△△△)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	2021. 10. 20.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7개월	• (제8호) 사업정지 6개월(2차) • (제10호) 사업정지 1개월(1차) <sup>15)</sup>

그 결과 위 1, 2를 종합해 볼 때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자가 법령기준 보다 완화된 처분을 받아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행정처분의 형평성 및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 조치할 사항 고령군수는

- ① 앞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자 등에게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5) 1차 영업정지 처분일로부터 동일 위반 행위 적발일 까지 1년을 경과하여 횡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1차 적용

# 경 상 북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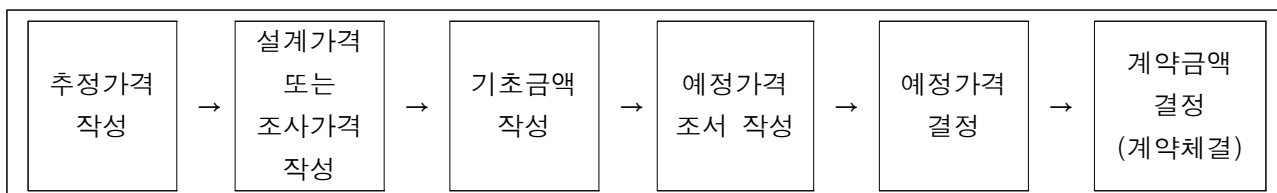
## 주 의 요 구

제 목 수문권양기 구매계약 부적정  
소 관 청 고령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고령군 ■■■과에서는 2021. 10. 22. ◆◆1수문 정비공사에 소요되는 수문권양기 등 245,520천 원<sup>16)</sup>을 구매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해 11. 10. 고령군 ■■■면 ■■■농공단지<sup>16)</sup>에 입주하고 있는 (주)○○○○○○와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요청서를 작성하여 ○○과로 수의계약을 요청하였고, 같은 해 11. 17. ○○과에서는 위 업체와 수의계약(계약기간: '21. 11. 17.~'22. 3. 31., 계약금액: 218,512천 원)을 체결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물품 구매계약을 위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을 삼기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거래실례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 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 [계약금액 결정 절차]



16) 조달수수료 제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2021. 9. 13.) 제2장 제2절 6-나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물품구매 추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물가정보지, 나라장터 등을 통해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부당하게 과잉 계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21. 10. 22. 수문권양기 관급자재 추정가격을 산정하면서 물가정보지를 통한 4개 업체 거래가격<sup>17)</sup>과 (주)○○○○○가 제출한 견적과의 비교를 소홀히 한 채 (주)○○○○○가 제출한 높은 견적가격을 적용하여 추정가격을 결정하였다.

[표] 관급자재 거래가격 비교

(단위 : 원)

구매품명	규격	수량 (a)	개별 가격(부가세 제외)			증감액 (a×b)	비고 <sup>주2)</sup>
			(주)○○○○○	최저가격 <sup>주1)</sup>	차액(b)		
계		21				57,784,000	
권양기	7.5톤	4	23,100,000	13,900,000	9,200,000	36,800,000	(주)ㄷㄷㄷ
랙크바	7.5톤	4	2,400,000	2,650,000	250,000	△1,000,000	(주)○○○○○
문비	2.8*3.0	4	9,600,000	5,950,000	3,650,000	14,600,000	□□□□□
전동장치	7.5톤	4	4,600,000	3,500,000	1,100,000	4,400,000	(주)ㄷㄷㄷ
스텐권양기카바	7.5톤	4	4,200,000	3,800,000	400,000	1,600,000	(주)♥♥♥♥♥
현장조작판넬	원방4회로	1	11,000,000	9,616,000	1,384,000	1,384,000	(주)ㄷㄷㄷ

주1) 물가정보지 비교업체 최저가격

주2) 물가정보지 비교업체 중 최저가격 업체

그 결과 수문권양기 추정가격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계약 낙찰률(90%<sup>18)</sup>)를 적용할 때 57,206,160원<sup>19)</sup>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다.

17) (주)□□□□□, (주)♥♥♥♥♥, □□□□□, (주)ㄷㄷㄷ 4개 사의 공급가격을 비교 조사

18) 90%(낙찰률) = 218,512,000원(계약금액)/245,520,000원(추정금액)

19) 57,206,160원 = {57,784,000+(57,784,000×10%)}×90%(낙찰률)

**조치할 사항** 고령군수는

- ① 앞으로 관급자재를 구매할 때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구매단가가 과잉 계산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통 보 · 주 의 요 구

제 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고령군  
관 계 부 서 ■■■읍 등 5개 읍·면  
내 용

고령군 ■■■읍 등 5개 읍·면에서는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받아 취득요건 및 농지 소유상한 면적 등을 검토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농지법」 제7조 제3항 및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농업인이 아닌 개인<sup>20)</sup>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내일 때에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농지소유자는 소유 상한 면적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 또는 소유 상한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등은 처분의무 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령군 ■■■읍 등 5개 읍·면에서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자가 이미 소유한 농지면적과 취득하려는 농지를 합한 면적이 총 1,000㎡를 초과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아야 하고, 소유 상한 면적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자에게는 해당 농지 또는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의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등의

20) 세대원의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총 면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고령군 종합감사 기간(2023. 2. 13. ~ 2. 24.) 중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 대한 업무처리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읍의 경우 ☒시 ○○군 ■■■읍에 거주하는 AAA이 2020. 7. 14.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읍 ●●리 40-1 농지 1필지(지목: 전) 853㎡를 취득하는 것으로 신청한 데 대하여 소유 상한 면적 1,000㎡를 초과<sup>21)</sup>하는지를 검토하지 않은 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였다.

그리고 △△면의 경우 ♥♥시 □□로에 거주하는 동일세대원 BBB, CCC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면 ♣♣리 349 농지 1필지(지목: 답) 1,062㎡를 절반씩 나누어 취득하는 것으로 신청한데 대하여 세대원이 소유한 농지를 합산한 면적이 소유 상한 면적 1,000㎡를 초과하는지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주는 등 농지 소유 상한 면적을 초과하는 총 11건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였다.

그 결과 소유 상한 면적 초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자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초과 면적에 대한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 등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고령군수는

- ①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1,000㎡를 초과하여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영농계획서를 보완하거나 해당 농지를 처분하는 등 적절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② 앞으로 「농지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심사 및 발급이 이루어지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1) 2020. 6. 23. ●●면에서는 AAA에게 ●●면 ◎리 460 농지 1필지(지목: 전) 263㎡를 취득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어 이번 853㎡를 취득하게 되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소유 제한면적(1,000㎡)을 초과(116㎡)하게 됨

[붙임]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소유 상한 초과 발급 명세

(단위 : m<sup>2</sup>)

연번	소관 기관	구분	신청인		처리일자	농지 소재지	지목	취득 면적	총면적	부적정 내역
			성명	주소						
합계	5개 읍면					35필지		13,507.69		
1	□□□읍	개인	AAA	☒☒☒광역시 ○○군 ☒☒읍 ●●로 64길 36-8	2020.07.14	●●리 40-1	전	853	1,116	116m <sup>2</sup> 초과
	2020.06.23				■리 460	답	263			
2	△△면	세대	BBB	●●●도 ●●시 ●●로 26, ♣♣동 ☺☺☺호 (●●동, ●●●●타운)	2021.02.26	♠♠리 349	전	531	1,062	62m <sup>2</sup> 초과
			CCC		2021.02.26	♠♠리 349	전	531		
3	△△면	개인	CCC	☒☒☒광역시 ○○군 ○○읍 ○○○북로 26, ●●●동 ☒☒☒호 (○○○○○○ 2단지)	2021.01.04	♣♣리 674	답	106	1,190.5	190.5m <sup>2</sup> 초과
					2021.01.04	♣♣리 675	답	130.5		
					2021.01.04	♣♣리 676	답	145.5		
					2020.06.08	♣♣리 677	답	149		
					2020.06.08	♣♣리 678	답	263		
					2020.06.08	♣♣리 679	전	396.5		
4	●●면	세대	DDD	☒☒☒광역시 ◇◇구 ◇◇로 145, ÜÜÜ동 ⅢⅢ호 (♣♣동, ◁◁◁◁◁ ◁-◁◁◁◁)	2021.03.02	◀◀리 176-9	답	651	1,957	957m <sup>2</sup> 초과
			2021.03.02		◀◀리 176-10	답	327.5			
			2021.03.02		◀◀리 176-9	답	651			
			2021.03.02		◀◀리 176-10	답	327.5			
5	●●면	개인	FFF	●●●도 ◁◁시 ☆☆면 ☆☆3길 23-59, ●●●동 ●●●●호 (◁◁ ▮▮▮▮▮▮ ▮)	2020.09.21	◀◀리 636	과수원	174.2	1,074.3	74.3m <sup>2</sup> 초과
						◀◀리 636-1	전	24.4		
						◀◀리 637	과수원	231.1		
					2020.09.10	◀◀리 636	과수원	261.3		
						◀◀리 636-1	전	36.6		
						◀◀리 637	과수원	346.7		

연번	소관 기관	구분	신청인		처리일자	농지 소재지	지목	취득 면적	총면적	부적정 내역
			성명	주소						
6	○○면	세대	GGG	☒☒☒광역시 ◇◇구 ▮▮▮로 11길 31(◁▷동)	2021.11.30	☞☞리 664	전	491.5	1,195.49	195.49m <sup>2</sup> 초과
							전	25		
			HHH		2021.11.25	☞☞리 664	전	327.66		
						☞☞리 665	전	351.33		
7	○○면	세대	III	☒☒☒광역시 ▮▮▮구 ▮▮▮로 71, ■■■동 ♥♥♥호 (■동, ⊗⊗⊗⊗ ☺☺☺시티)	2021.11.30	◀◀리 365	전	436	1,160	160m <sup>2</sup> 초과
			JJJ		2020.04.14	♣♣리 588	전	724		
8	○○면	세대	KKK	●▽▽도 □□군 ○○면 ♣♣로 3328	2020.09.08	●▽리 43-74	전	781.9	1,607.4	607.4m <sup>2</sup> 초과
			LLL		2019.12.19	☒☒리 505	답	825.5		
9	○○면	세대	MMM	☒☒☒광역시 ◇◇구 ☺☺로 122 ▮▮▮동 ☒☒☒호 (△△동 ♥♥♥차 □□타운)	2021.02.09	▮▮▮리 887	답	526	1,028	28m <sup>2</sup> 초과
			NNN		2021.02.09	▮▮▮리 888-2	전	502		
10	○○면	세대	OOO	☒☒☒광역시 ◇◇구 ●▽로 36 ●▽▽동 ●▽▽호 (◇◇동 ♥♥♥♥♥파크)	2021.02.23	♥♥리 420	답	630	1,085	85m <sup>2</sup> 초과
			PPP		2021.02.23	♥♥리 420	답	406		
			QQQ		2020.11.30	♥♥리 419-2	전	49		
11	○○면	세대	RRR	☒☒☒광역시 ●구 ○○로 26 ☺☺☺동 ☺☺☺호 (○○동 ○○○월드 □□□□아파트)	2020.12.31	♥♥리 420-7	전	516	1,032	32m <sup>2</sup> 초과
			SSS		2020.12.31	♥♥리 420-7	전	516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등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청	고령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고령군 ⊙⊙⊙⊙과(구 ÜÜ과)에서는 화물업계의 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령군에 등록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관리하고 있다.

###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의심거래 상시점검 미이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4조 제12호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 점검시스템(이하 “상시 점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화물차주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를 유형별로 자동 추출하여 제공하고 부정수급 조사 및 행정처리 절차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33조 제3호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상시 점검시스템으로 통보되는 부정수급 의심거래에 대하여 1개월 내에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통보되는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와 별개로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군에서는 상시 점검시스템으로 통보되는 부정수급 의심거래에 대하여 1개월 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3개월 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했으며,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에 대하여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고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는데도, 다음 [표 1]과 같이 2021. 1. 1.부터 2022. 12. 31.까지 상시 점검시스템으로 통보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620건(2021년 528건, 2022년 92건)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도 조사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방치 해 두고 있다.

[표 1]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점검 미이행 현황

(단위 : 명, 천 원)

구분	통보현황						처리현황 (미이행 현황)		
	계		2021		2022		계	2021	2022
	인원	보조금액	인원	보조금액	인원	보조금액	인원	인원	인원
계	894	50,741	597	31,955	297	18,786	274 (620)	69 (528)	205 (92)
거리대비 주유시간 이상 주유	4	45	4	45	0	0	0 (4)	0 (4)	0
유효 하지 않은 사업자의 의심주유	890	50,696	593	31,910	297	18,786	274 (616)	69 (524)	205 (92)

※ 고령군 제출자료 재구성

## 2.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행정제재 미이행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1항 제6호 및 제29조에 따르면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 환수 및 1년의 범위 내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군에서는 상시 점검시스템에서 의심되는 항목별 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 유무를 확인하고 부정수급으로 나타날 경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하고 1회 위반 시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회 이상 위반 시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표 2]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고령군 ♣♣♣♣실-9469(2022. 10. 7.)호)

지자체명	경북 고령군			
차주 사업번호	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		=====	
차량번호	경북㉠㉠㉠㉠㉠		경북0000000	
차주성명	Ⅲ		ⅣⅣⅣ	
거래승인일	2021-08-10		2021-05-05	
거래승인시각	13:56:42	14:47:30	13:14:45	13:39:07
거래승인금액	39,580	60,000	50,000	29,310
보조금액리터	28	43	38	23
보조금액	9,837	14,785	13,099	7,978
카드번호	*****	*****	*****	*****
카드사명	신한	현대	삼성	우리
가맹점명	ΣΣ주유소	ΘΘ(KK방향)주유소	NN주유소	⊙⊙IC주유소
가맹점 주소명	ΩΩΩ도 PP시 Ⅲ대로 3740 ΣΣ주유소	ㄹㄹ북 ⅣⅣ군 ⅣⅣ읍 ⊙⊙⊙일로 265-19	ΩΩΩ도 ⊙⊙시 ⅣⅣ로 918 (ⅣⅣ동)	ⅣⅣ광역시 ⅣⅣ구 ⅣⅣ로 183(ⅣⅣ동)
가맹점 지자체	ΩΩ PP시	ㄹㄹ북 ⅣⅣ군	ΩΩ ⊙⊙시	ⅣⅣ ⅣⅣ구
실제거리(km)	197	197	45	45
실제소요시간(분)	126	126	42	42
속력(km/h)	93	93	65	65
거래소요시간(분)	50	50	24	24
속력(km/h)	236	236	114	114
소요시간편차(분)	76	76	18	18
톤수	1톤이하	1톤이하	1톤이하	1톤이하
조사결과	부정청구(미환수)	부정청구(미환수)	부정청구(미환수)	부정청구(미환수)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2021년 기간 동안 상시 점검시스템의 ‘거리대비 주유시간 이상 주유 4건’에 대하여 13개월 이상 아무런 행정조치 없이 방치함으로써 아래 [붙임]과 같이 지급 정지해야 할 유가보조금 1,373천 원(Ⅲ 943천 원, ㄹㄹㄹㄹ 430천 원)이 지급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조치할 사항 고령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붙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

(단위 : 원)

차량번호	승인일자	성명	보조금액	보조리터	차량번호	승인일자	성명	보조금액	보조리터
<b>합 계</b>			<b>2명 / 1,373,910원</b>						
<b>소계</b>	<b>***(<b>경북○○○○○○○○</b>)</b>		<b>943,050원</b>		경북○○○○○○○○	2021-12-03 05:44:34	***	6575	27.42
경북○○○○○○○○	2021-08-10 06:04:34	***	7408	21.44	경북○○○○○○○○	2021-12-07 05:57:16	***	6666	27.8
경북○○○○○○○○	2021-08-10 13:56:42	***	9837	28.47	경북○○○○○○○○	2021-12-09 05:46:59	***	6666	27.8
경북○○○○○○○○	2021-08-10 14:47:30	***	14785	42.79	경북○○○○○○○○	2021-12-12 10:53:53	***	8390	34.99
경북○○○○○○○○	2021-08-12 12:48:33	***	15079	43.64	경북○○○○○○○○	2021-12-15 05:43:10	***	8390	34.99
경북○○○○○○○○	2021-08-13 05:54:30	***	14820	42.89	경북○○○○○○○○	2021-12-17 05:15:24	***	6711	27.99
경북○○○○○○○○	2021-08-16 13:18:30	***	12439	36	경북○○○○○○○○	2021-12-21 05:36:05	***	6711	27.99
경북○○○○○○○○	2021-08-17 14:59:49	***	17591	50.91	경북○○○○○○○○	2021-12-23 04:16:26	***	5141	21.44
경북○○○○○○○○	2021-08-18 06:02:25	***	7463	21.6	경북○○○○○○○○	2021-12-26 11:21:19	***	8570	35.74
경북○○○○○○○○	2021-08-19 06:14:19	***	12439	36	경북○○○○○○○○	2021-12-28 15:26:04	***	10284	42.89
경북○○○○○○○○	2021-08-23 06:06:20	***	9951	28.8	경북○○○○○○○○	2021-12-31 10:39:00	***	6855	28.59
경북○○○○○○○○	2021-08-23 14:38:18	***	17591	50.91	경북○○○○○○○○	2022-01-05 05:09:46	***	8656	36.1
경북○○○○○○○○	2021-08-24 14:07:47	***	12384	35.84	경북○○○○○○○○	2022-01-07 05:08:41	***	8656	36.1
경북○○○○○○○○	2021-08-25 08:39:01	***	19844	57.43	경북○○○○○○○○	2022-01-08 13:53:59	***	12118	50.54
경북○○○○○○○○	2021-08-26 05:56:17	***	7463	21.6	경북○○○○○○○○	2022-01-10 05:46:11	***	6925	28.88
경북○○○○○○○○	2021-08-30 06:06:10	***	9951	28.8	경북○○○○○○○○	2022-01-12 14:22:39	***	8656	36.1
경북○○○○○○○○	2021-08-31 13:54:10	***	9906	28.67	경북○○○○○○○○	2022-01-14 06:07:27	***	6925	28.88
경북○○○○○○○○	2021-09-01 08:42:34	***	14968	43.32	경북○○○○○○○○	2022-01-17 05:49:34	***	6925	28.88
경북○○○○○○○○	2021-09-02 06:14:02	***	10024	29.01	경북○○○○○○○○	2022-01-19 06:12:24	***	6925	28.88
경북○○○○○○○○	2021-09-06 14:20:37	***	17290	50.04	경북○○○○○○○○	2022-01-21 05:09:22	***	8656	36.1
경북○○○○○○○○	2021-09-07 05:38:13	***	10024	29.01	경북○○○○○○○○	2022-01-22 13:27:18	***	11425	47.65
경북○○○○○○○○	2021-09-07 13:47:06	***	9906	28.67	경북○○○○○○○○	2022-01-24 05:48:53	***	6855	28.59
경북○○○○○○○○	2021-09-08 08:53:11	***	17463	50.54	경북○○○○○○○○	2022-01-26 05:41:44	***	8570	35.74
경북○○○○○○○○	2021-09-09 05:03:53	***	10024	29.01	경북○○○○○○○○	2022-01-28 05:54:40	***	8169	34.07
경북○○○○○○○○	2021-09-10 13:54:49	***	9906	28.67	경북○○○○○○○○	2022-02-04 05:46:44	***	6575	27.42
경북○○○○○○○○	2021-09-13 08:38:46	***	17463	50.54	경북○○○○○○○○	2022-02-08 05:51:59	***	6575	27.42
경북○○○○○○○○	2021-09-14 05:34:56	***	12529	36.26	<b>소 계</b>	<b>****(<b>경북○○○○○○○○</b>)</b>		<b>430,860원</b>	
경북○○○○○○○○	2021-09-15 05:59:46	***	12529	36.26	경북○○○○○○○○	2021-05-05 13:14:45	****	13099	37.91
경북○○○○○○○○	2021-09-16 13:41:43	***	17591	50.91	경북○○○○○○○○	2021-05-05 13:39:07	****	7978	23.09
경북○○○○○○○○	2021-09-20 08:59:40	***	12529	36.26	경북○○○○○○○○	2021-05-07 14:45:27	****	13099	37.91
경북○○○○○○○○	2021-09-27 16:33:23	***	17591	50.91	경북○○○○○○○○	2021-05-08 21:45:02	****	7978	23.09

차량번호	승인일자	성명	보조금액	보조리터	차량번호	승인일자	성명	보조금액	보조리터
경북0000000	2021-09-28 06:05:51	***	12439	36	경북0000000	2021-05-10 14:56:54	***	13099	37.91
경북0000000	2021-09-29 06:15:46	***	12439	36	경북0000000	2021-05-11 07:41:22	***	7978	23.09
경북0000000	2021-09-29 17:05:25	***	7384	21.37	경북0000000	2021-05-13 12:06:25	***	13099	37.91
경북0000000	2021-09-30 05:50:21	***	12439	36	경북0000000	2021-05-13 12:33:50	***	7978	23.09
경북0000000	2021-10-01 15:05:42	***	17591	50.91	경북0000000	2021-05-15 10:17:20	***	7923	22.93
경북0000000	2021-10-05 10:27:56	***	7411	21.45	경북0000000	2021-05-15 14:56:05	***	13099	37.91
경북0000000	2021-10-05 13:42:17	***	7311	21.16	경북0000000	2021-05-16 08:44:39	***	8237	23.84
경북0000000	2021-10-08 06:07:21	***	12176	35.24	경북0000000	2021-05-17 14:47:16	***	13099	37.91
경북0000000	2021-10-08 12:03:17	***	17021	49.26	경북0000000	2021-05-18 09:39:11	***	7805	22.59
경북0000000	2021-10-13 16:12:00	***	16579	47.98	경북0000000	2021-05-20 15:31:17	***	13095	37.9
경북0000000	2021-10-14 05:58:02	***	9474	27.42	경북0000000	2021-05-22 08:15:01	***	7978	23.09
경북0000000	2021-10-14 13:43:55	***	9350	27.06	경북0000000	2021-05-22 13:47:05	***	13095	37.9
경북0000000	2021-10-18 06:07:16	***	9281	26.86	경북0000000	2021-05-25 08:26:26	***	10487	30.35
경북0000000	2021-10-18 13:06:45	***	9225	26.7	경북0000000	2021-05-25 15:02:14	***	13095	37.9
경북0000000	2021-10-19 10:23:49	***	6841	19.8	경북0000000	2021-05-27 14:16:18	***	13095	37.9
경북0000000	2021-10-19 15:11:28	***	9156	26.5	경북0000000	2021-05-30 13:35:40	***	8006	23.17
경북0000000	2021-10-20 06:05:06	***	6962	20.15	경북0000000	2021-05-31 15:32:12	***	1710	4.95
경북0000000	2021-10-20 14:44:01	***	16026	46.38	경북0000000	2021-06-01 09:57:16	***	10646	30.81
경북0000000	2021-10-22 06:15:26	***	11447	33.13	경북0000000	2021-06-03 15:23:53	***	13095	37.9
경북0000000	2021-10-26 06:01:50	***	9160	26.51	경북0000000	2021-06-17 17:34:44	***	14281	41.33
경북0000000	2021-10-27 06:17:10	***	11447	33.13	경북0000000	2021-06-28 19:15:51	***	15075	43.63
경북0000000	2021-10-29 06:01:21	***	6824	19.75	경북0000000	2021-07-03 17:17:01	***	17681	51.17
경북0000000	2021-11-01 06:04:55	***	11299	32.7	경북0000000	2021-07-08 08:51:55	***	12353	35.75
경북0000000	2021-11-03 15:22:22	***	13299	38.49	경북0000000	2021-07-21 08:35:22	***	12263	35.49
경북0000000	2021-11-04 06:01:32	***	11226	32.49	경북0000000	2021-07-28 10:09:54	***	12256	35.47
경북0000000	2021-11-04 12:31:40	***	8870	25.67	경북0000000	2021-08-02 10:37:27	***	12263	35.49
경북0000000	2021-11-05 05:44:42	***	8980	25.99	경북0000000	2021-08-08 07:02:04	***	12166	35.21
경북0000000	2021-11-09 06:06:30	***	8866	25.66	경북0000000	2021-08-10 09:55:52	***	12263	35.49
경북0000000	2021-11-12 05:50:25	***	7642	31.87	경북0000000	2021-08-13 08:20:44	***	12263	35.49
경북0000000	2021-11-16 06:06:08	***	8107	33.81	경북0000000	2021-08-24 08:18:04	***	12353	35.75
경북0000000	2021-11-18 05:36:00	***	6486	27.05	경북0000000	2021-08-27 15:48:55	***	12259	35.48
경북0000000	2021-11-23 05:52:21	***	8217	34.27	경북0000000	2021-09-06 10:31:42	***	12353	35.75
경북0000000	2021-11-25 05:41:54	***	6575	27.42	경북0000000	2021-09-25 09:44:46	***	12353	35.75
경북0000000	2021-11-29 05:49:52	***	6575	27.42	경북0000000	2021-09-27 08:36:02	***	9913	28.69
경북0000000	2021-12-01 05:39:29	***	6575	27.42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농산물유통센터 종합자재판매장 건립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고령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고령군 ■■■■과에서는 농자재 유통 및 관리 효율성 제고를 통한 농업인의 편익 도모를 위해 다음 [표]와 같이 농산물유통센터 종합자재판매장 건립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보조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 원)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 업 비			사업내용	비고
		합 계	군비	자부담		
'22년 농산물유통센터 종합자재판매장 건립 지원사업	 협동조합	380,122	190,000	190,122	• 내용 : 종합자재판매장 건립 • 위치 : □□□읍 △△리 188-3 • 규모 : 300㎡	

### 1. 보조사업자 선정 업무 처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방식으로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군수는 매 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고령군 **과**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절차를 통하여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22년 농산물유통센터 종합자재판매장 건립 보조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 공보나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공모절차 없이 **에**만 사업계획을 통보하여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았다.

또한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보조사업자 선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 2.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등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고령군 ■■■■과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기 전에 교부 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등을 검토하여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했다.

그러나 위 부서에서는 ■■■■■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종합자재판매장의 규모, 구체적인 세부사업계획, 산출기초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고, 견적서, 설계내역 등의 증빙서류도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사업내용의 보완 요청, 내용 및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확인 등 사업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교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조치할 사항 고령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특정인의 기술·자격 등 사유의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소 관 청 고령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고령군 UUUU센터 >>>>>과(이하 위 부서)에서는 휴양림, 생태숲, 수목원 등 숲을 찾는 주민들에게 숲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년~‘22년까지 숲해설 운영 사업 용역을 발주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로서 각 호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sup>22)</sup>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 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

22)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거 특정인은 학술연구의 차별성·특수성 등으로 인해 당해 학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하나 뿐인** 경우에 그 자를 의미함(○○○○부 ◀◀◀◀과-139, 2012. 2. 8.)  
② 2020 지방계약 실무편람(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 소액인 경우, 계속공사로 인해 새로운 입찰절차가 필요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가 1인 밖에 없거나, 중소기업 보호 등의 경우에 한정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음

등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 10. 8.)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용역·물품기타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 등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열거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숲해설 운영 사업 용역’은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교육·행사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고령군에서는 ‘숲해설 운영 사업 용역’을 추진할 경우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추진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등의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했다.

한편, 감사기간 동안 타 지자체의 ‘숲해설 운영 사업 용역’ 내역을 나라장터에서 검색한 결과 ‘20년~’22년 기간 동안 타 지방자치단체의 2인 견적 소액수의 공고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내역이 다수 조회되었으며, 고령군 ☎☎☎☎소<sup>23)</sup>는 ‘23년 숲해설 위탁용역 사업 추진계획<sup>24)</sup>과 관련하여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위 부서의 수의계약 요청 사유<sup>25)</sup>에 따르면 ‘정부지원 숲해설 일자리 사업을

23) ‘22. 10. 17. UUUU센터에서 ☎☎☎☎소로 ‘숲해설 운영 사업’이 이관됨

24) ‘23년 숲해설 위탁용역 사업 추진계획(고령군 ☎☎☎☎소-699(2023. 2. 7.)호, 사업비 : 57,332,000원)

25)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 : 특정인의 기술·품질, 경험·자격이 필요한 교육·행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2021. 8. 23. 산림청 고시 제2021-104호 산림교육 업무 위탁 고시에 따르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업무를 위탁받는다고 되어 있음

③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위탁사업자와의 계약(UUUU센터 >>>>과-4864(2019. 2. 19.)호, >>>>과

산림복지전문업에 위탁운영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휴양림과 수목원을 찾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숲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자 선정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므로 특정인이 해당 사업을 수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사유로 특정인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UU UU센터 ■■■■■과에서는 그 요청을 수용하여 다음 [표]와 같이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 ‘20년~‘22년 숲해설 운영 사업 용역 추진 현황

(단위 : 천 원)

사업명	계약상대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방법	수의계약사유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합 계					155,056		
2020년 숲해설 운영사업	주식회사 §§§§연구소	‘20.02.27.	‘20.03.01.	‘20.11.30.	51,000	1인 견적	특정인의 기술·경험·자격 등이 필요한 교육·행사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
2021년 숲해설 운영사업	□□□□□□ 연구소	‘21.03.02.	‘21.03.02.	‘21.11.30.	51,104	1인 견적	
2022년 숲해설 운영사업	□□□□□□ 연구소	‘22.03.02.	‘22.03.02.	‘22.11.30.	52,952	1인 견적	

**조치할 사항 고령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5288(2020. 2. 20.)호, >>>>과-8168(2021. 2. 25.)호, >>>>과-2108(2022. 2. 17.)호  
 → 고령군에서는 일반홈페이지에 숲해설 용역 관련 사업자 모집 공고 후 특정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 등에 대해 UU UU센터 관하 부서의 자체심의 후 사업자 선정보고이며, ‘19~’22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산림청)에 따르면 숲 해설 사업 등 산림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 심사를 통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체결을 권장하며, 계약체결 방법으로는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등에 따라 계약 체결할 것으로 되어 있음



업체명 (대표자명)	업종	생산품	소재지	용도지역	용도	승인일
(주)▷▷▷▷▷ (DDD)	육상 금속 골조구조재 제조업 외 1종	금속 플랜트 등	○○면 ●리 산60	농림지역	제조업소	2015.7.7.
◀◀◀◀ (EEE)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등	○○면 ●리 산60	농림지역	공장	2015.7.7.

「공장입지 기준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80호, 2012. 4. 19.) [별표 2] 15.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저수지 상류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외의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流下距離)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인 경우에는 공장설립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저수지의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제1항에는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저수지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4조에 따르면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 기관 또는 부서 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한꺼번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주)☆☆☆☆☆☆ 외 4개 업체의 공장신설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저수지 상류지의 공장 설립 제한과 관련하여 부서 간 협의를 거쳤어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주)☆☆☆☆☆☆ 외 4개 업체의 공장신설승인 신청에 대하여 ○○면 ●리 산60번지가 ♣♣못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流下距離)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됨에도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공장설립승인을 해 준 사실이 있다.

## 2. 공장설립 승인 후 미완료신고 건에 대한 공장취소 업무처리 소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의2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후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5개 업체에 대하여 공장설립승인(2015. 7. 7.) 후 ○○면 ●리 산60번지 일대에 민원<sup>27)</sup>이 제기 되는 등 공장설립승인의 담당부서로서 공장설립 승인 취소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공장설립승인 후 4년이 지나도록 완료 신고를 받지 못한 건에 대하여 387일이 더 지난 후에야 청문(2020. 7. 29.)을 실시한 후 2020. 7. 29.에 공장신설승인 취소처분<sup>28)</sup>을 한 사실이 있다.

## 3. 개발행위허가 기간만료에 따른 업무처리 소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27) 국민신문고 민원(\*\*\*-\*\*\*\*-\*\*\*\*\*, 2019.9.19.), “고령군 ○○면 ●리 산 60-3번지 일대 토석채취허가 및 귀금속 광물분쇄장 설치허가에 관한 건”

28) <<<<과-40488(2020. 7. 29.)호 ‘공장신설승인 취소처분 통보’

처분)제1항 제5호의2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기간 내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면 허가의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다음 [표 2]와 같이 2015. 12. 1. 개발행위허가 된 건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기간(2015. 12. 1.~2016. 6. 30.) 내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면 허가의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 ●리 산60번지 일원에는 다음 [표 3]과 같이 2017~2019년 기간 동안 3건의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위 부서에서는 이를 인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후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고 나서야 2019. 12. 6.(4건), 2019. 12. 27.(1건)에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sup>29)</sup>을 한 사실이 있다.

[표 2] 개발행위허가 내역

신청인	토지소재지	용도지역	신청면적(㎡)	목적	허가 사업기간
AAA ●●●●●	○○면 ●리 산60	농림지역 (보전산지)	6,185	공장부지 조성	2015.12.1.~ 2016.6.30.
BBB (주)○○○○○	○○면 ●리 산60	농림지역 (보전산지)	4,456	공장부지 조성	2015.12.1.~ 2016.6.30.
CCC (주)☆☆☆☆☆☆	○○면 ●리 산60	농림지역 (보전산지)	1,645	공장부지 조성	2015.12.1.~ 2016.6.30.
DDD (주)▷▷▷▷▷	○○면 ●리 산60	농림지역 (보전산지)	2,400	공장부지 조성	2015.12.1.~ 2016.6.30.
EEE ◀◀◀◀	○○면 ●리 산60	농림지역 (보전산지)	9,070	공장부지 조성	2015.12.1.~ 2016.6.30.

[표 3]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내역

접수번호	신청일	민원제목	비고
****-*****-*****	2017.7.25.	경북 고령군 ○○면 ●리 산 60-3, 산60, 산 53-1는 지목이 산(임)입니다.	

29) ◀◀◀◀과-46892, 46893, 46894, 46895(2019.12.6.)호, ◀◀◀◀과-50228(2019.12.27.)호

접수번호	신청일	민원제목	비고
****-*****-*****	2019.9.19.	고령군 ○○면 ●리 산 60-3번지 일대 토석채취허가 및 귀금속 광물분쇄장 설치허가에 관한 건	
****-*****-*****	2019.9.23.	고령군 ○○면 ●리 산60번지 일대 공장허가신청부지 무단 개발에 관한 건	

#### 4. 산지전용허가 협의지 사후관리 소홀

「산지관리법」(법률 제15309호, 2018. 3. 27.)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제5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53호, 2018. 4. 19.) 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 제53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의 기간에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지의 복구의무자는 산지복구설계서를 산지전용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허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미제출 시 허가권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2015. 7. 7. ○○면 ●리 산60번지 내 (주)○○○○의 4개 업체 공장설립승인 건에 대하여 다음 [표 4]과 같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2018. 6. 30.)되어 2018. 5. 29. 복구의무자들에게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그 이후 2018. 6. 22.부터 2019. 4. 22.까지 4차례 더 제출촉구<sup>30)</sup>하였고, 결론적으로 복구의무자로부터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받지 못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30) 1. 2018. 6. 22. “산지전용기간 만료예정에 따른 복구설계서 제출 촉구(1차)”  
 2. 2018. 7. 23. “산지전용기간 만료예정에 따른 복구설계서 제출 촉구(2차)”  
 3. 2019. 3. 18. “산지전용기간 만료예정에 따른 복구설계서 제출 촉구(3차)”  
 4. 2019. 4. 22. “산지전용기간 만료예정에 따른 복구설계서 제출 촉구(4차)”

[표 4] 산지전용허가(협의) 내용

소재지	전용면적(m <sup>2</sup> )	전용 목적	전용 기간	수허가자	비고 (과태료대상)
○○면 ●리 산60	6,185	공장 신축	2015. 7. 7. ~ 2018. 6. 30.	AAA ●●●●	50만원
○○면 ●리 산60	4,456	공장 신축	2015. 7. 7. ~ 2018. 6. 30.	BBB (주)○○○○	50만원
○○면 ●리 산60	1,645	공장 신축	2015. 7. 7. ~ 2018. 6. 30.	CCC (주)☆☆☆☆☆☆	50만원
○○면 ●리 산60	2,400	공장 신축	2015. 7. 7. ~ 2018. 6. 30.	DDD (주)▷▷▷▷▷	50만원
○○면 ●리 산60	9,070	공장 신축	2015. 7. 7. ~ 2018. 6. 30.	EEE ◀◀◀◀	50만원

조치할 사항 고령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산지복구설계서 미제출자인 산지전용허가의 복구 의무자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고령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고령군 ■■■과에서는 다음 [표 1]와 같이 “◆◆◆◆◆◆◆◆(◎◎) 정비사업”을 ●●건설(주) ◆◆◆ 외 2개사와 2021. 3. 9. 공사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다.

[표 1] 공사 현황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공사비(백만 원)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계	도급	관급			
◆◆◆◆◆◆◆◆ (◎◎) 정비사업	<<<<< ●●	☒☒ ☒☒	하천 축제 L=5.26km	18,317	9,433	8,884	2021.3.15. ~ 2024.7.14.	(공동:토목공사업) - ●●건설(주) ◆◆◆(62.0%) ☆☆건설(주) ☒☒☒(38.0%) (분담:조경공사업) - ◎◎조경(주) ☒☒☒(100%)	

### 1. 하천기본계획 변경 미이행

「하천법」 제25조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계획홍수량을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증가시키는 것, 계획하폭을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미한 사항은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828호, 2021. 3. 2.) 제13조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또는 변경 목적,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령군 ■■■과에서는 “◆◆◆◆◆◆◆(●●) 정비사업”을 지방하천인 ●●에 축제 L=5.26km와 일부 고수부지에 하천환경정비를 위하여 생태문화구간<sup>31)</sup>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문화구간 조성으로 인한 지방하천인 ●●의 홍수위 변화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지방하천 ●● 홍수위 변화

(단위 : m, 측정간 거리 100m)

측점 (NO)	계획 홍수량	홍수위			비고	측점 (NO)	계획 홍수량	홍수위			비고
		시설물 설치전(A)	시설물 설치후(B)	차이 (B-A)				시설물 설치전(A)	시설물 설치후(B)	차이 (B-A)	
148	3,740	24.98	24.98	0.00		163	2,050	26.08	26.15	0.07	
149	3,740	25.13	25.11	-0.02		164	2,050	26.24	26.30	0.06	
150	3,740	25.25	25.26	0.01		165	2,050	26.39	26.45	0.06	
151	3,740	25.38	25.40	0.02		166	2,050	26.56	26.60	0.04	
152	3,740	25.46	25.49	0.03		167	2,050	26.72	26.75	0.03	
153	3,740	25.58	25.63	0.05		+79	2,050	26.81	26.84	0.03	
154	3,740	25.62	25.67	0.05		168	2,050	26.83	26.86	0.03	
155	2,050	25.70	25.75	0.05		169	2,050	26.95	26.98	0.03	
156	2,050	25.72	25.78	0.06		+53	2,050	27.30	27.32	0.02	
157	2,050	25.74	25.81	0.07		170	2,050	27.20	27.21	0.01	
158	2,050	25.76	25.84	0.08		+89	2,050	27.47	27.48	0.01	
159	2,050	25.80	25.88	0.08		171	2,050	27.47	27.49	0.02	
160	2,050	25.84	25.93	0.09		172	2,050	27.63	27.64	0.01	
161	2,050	25.85	25.94	0.09		173	2,050	27.83	27.84	0.01	
162	2,050	25.92	26.03	0.09		174	2,050	28.06	28.06	0.00	

※ 고령군에서 제출한 생태문화구간 조성 시 홍수위 변화 자료

31) 생태문화구간 설치 현황 : ① ○○실 문화마당(A=7,750㎡, 문화광장, 산책로 등), ② ▲▲ 어울림마당(A=26,500㎡, 수변스탠드, 진입계단, ▲▲전망대, 환경사 사면 등), ③ ●●마당(A=27,500㎡, ●●마당, 휴게공간 등), ④ ●●● 수련관찰마당(A=26,000㎡, 수제, 관찰데크, 수변스탠드, ●●● 등), ⑤ ○○원(A=87,870㎡, 수변스탠드, 초본류식재, 전망데크, 생태습지, 앳음돌 등)

또한 고령군 ■■■과에서 지방하천 고수부지에 추진하는 생태문화구간 조성은 측점 NO 148에서부터 NO 170까지이고, 그에 따른 지방하천 홍수위가 2.3km구간에 0.01m~0.09m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하천 홍수위가 0.01m~0.09m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하천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검토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 2.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부적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고령군 ■■■과에서는 “◆◆◆◆◆◆◆(●●)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직포 및 순환골재를 구입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대상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구입하지 않고 사급자재로 구입하여 중소기업자 다수의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고 사업비 73,055천 원<sup>32)</sup>을 낭비하였다.

3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낙찰하한율 87.995%적용

### 3. 공사비 과다 계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종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 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 된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하천공사 설계실무 요령」(2016.12.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천호안 밑다짐<sup>33)</sup>은 하상세굴이 우려되고 비탈덧기 및 기초부분 보호가 필요한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천 합류부나 하폭이 넓은 구간, 만곡 내측구간 등의 퇴적구간은 현지조사, 하상변동조사 및 분석, 피해이력조사 등을 통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령군 ■■■과에서는 “◆◆◆◆◆◆◆(●●) 정비사업” 예정지구 구간에 밑다짐을 NO 34에서 NO 90까지(L=2.24km) 계획하였으나, 하상세굴이 우려되지 않고, 하천 합류부나 넓은 하폭, 만곡부 외측구간이 아닌 NO 34부터 NO 52구간까지(L=0.72km) 밑다짐을 무분별하고 과다하게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과다계상 된 사업비 63,174천 원(제경비 포함)을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여야 하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33) 비탈덧기 및 비탈멈춤의 하상변화에 의한 움직임을 막기 위하여 하상 변화에 대한 순응성(굴요성)을 가진 재료로 비탈멈춤 앞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조치할 사항 고령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과다계상 된 사업비 63,174,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호(▶리~◀리) 도로 확장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고령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고령군 ■■■과에서는 다음 [표 1]와 같이 “□□□호(▶리~◀리) 도로 확장 공사를 ■■■종합건설(주) ■■■■■과 2021. 12. 2.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다.

[표 1]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공사비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계	도급	관급			
□□□호 (▶리~◀리) 도로 확장공사	▽▽	▶리 ▶▶리	도로 확장 L=1.735km	3,052	1,699	1,353	‘21.12.8.~ ‘23.11.27. ※ 2021.12.29. 공사 중지 (보상협의 지연)	■■■종합건설(주) ■■■■■	

### 1. 공사현장대리인 배치기준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 사업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해당 공사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건설 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5항 및 별표 5에 따르면 공사에정 금액의 규모가 30억 원 미만인 경우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 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배치기준에 적합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5]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공사 착공 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등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착공신고서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자격사항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고령군 ■■■과에서는 2021. 12. 8. 제출된 공사착공신고서에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토목분야 고급기술자인 AAA’를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신고하였으나, 2022. 3. 18. 현장대리인을 ‘당초 신고된 AAA’에서 ‘토목분야 초급기술자인 BBB’로 변경 신고하였다.

한편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변경 신고된 ‘BBB’의 건설기술인 경력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토목분야 초급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현장인 도로분야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를 한 인정일수는 385일로 배치기준인 3년(1,095일)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고령군 ■■■과에서는 고령군 종합감사 기간 중에 기 배치된 ‘BBB’의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부적합 사실을 인지하여, 2023. 2. 16.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적합한 ‘토목분야 중급기술자인 CCC’으로 변경하였다.

이로 인해 위 공사현장은 2022. 3. 18.부터 2023. 2. 15.까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술인이 배치되어 공사추진이 부실하게 운영되었다.

## 2. 교통시설안전진단 미이행

「교통안전법」 제34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철도·공항의 교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교통시설의 설치 전에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구분	대상 교통시설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
가. 도로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건설 가) 일반국도·고속국도 : 총 길이 5km 이상 나)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총 길이 3km 이상 다) 시도·군도·구도 : 총 길이 1km 이상	2)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따라서 고령군 ■■■과에서는 “■■■호(▶리~◀◀리) 도로 확장공사”의 도로 총길이가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에 해당된다면 도로 구역의 결정전에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호(▶리~◀◀리) 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도로 총길이가 1.7km로 군도 총길이가 1.0km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도로구역 결정(2022. 6. 27.) 전에 교통시설안전진단 등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였다.

## 3. 공사비 과다 계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종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 된 공정은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고령군 ■■■과에서는 “■■■호(▶리~◀◀리) 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도로 비탈면 보호공을 거적덮기와 종자살포(3,711원/m<sup>2</sup>)로 시공하면 더욱 경제적임에도 가격이 비싼 평떼(11,168원/m<sup>2</sup>) 및 줄떼(6,523원/m<sup>2</sup>)를 설계에 반영하여 24,959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고,

또한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공이 불필요한 장철근 22.059톤을 가공 물량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공장에서 가공이 가능한 철근 31.252톤을 현장 가공으로 반영하여 29,200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 조치할 사항 고령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54,159,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도로 확장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고령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고령군 ■■■과에서는 다음 [표]와 같이 ▼▼~◆◆◆ 산업단지간 연계도로 확장공사 및 ▽▽도로(■■■■■■■■호) 도로확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 산업단지간 연계도로 확장공사	⊗ ▼▼	♣ ◎◎	도로확장 L=2.2km, B=20m	5,283	2021.1.26.	2021.2.1.~ 2023.10.3.	∈∈건설(주) AAA	
▽▽도로(■■■■■■■■호) 도로 확장공사	●●●	☆☆ ★★	도로확장 L=2.0km, B=10m	889	2022.2.17.	2022.2.24.~ 2023.9.23.	(주)크크산업 BBB	

### 1.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장 미통보

「자연환경보전법」(법률 제16806호, 2020. 6. 11.)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개발사업(개발면적 3만㎡ 이상) 등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 내용 및 사업규모 등을 포함한 인·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환경부장관은 위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군은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고령군 ■■■과에서는 ▼▼▼~◆◆◆ 산업단지 간 연계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업면적 59,797㎡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 대상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사업내용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생태계 보전협력금 36,500천 원(설계서 기준)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 2. 건설공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미수립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등) 제1항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sup>34)</sup>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 착공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계획, 그 밖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기준) 규정에 따른 ① 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관리방식 ③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④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주청은 같은 법 제39조의 2,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34)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하는 건설공사 및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기술자문위원회를 둔 발주청이 발주하는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구조물이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 중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또한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고령군에서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3. 설계변경 부적정 등 공사감독 업무 소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87호, 2020. 12. 16.)」 제4조, 제138조 제1항, 제14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설계도면·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2021. 4. 1.)」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도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자는 공사추진 시 공사가 설계도서 및 공정계획표 대로 추진이 되었는지 공사 시행 단계별로 정확히 확인·검측하여 공사시설물이 차질 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초 설계에 공사무량 및 공사자재 등이 과다 산정되었거나 현장여건의 변동 등으로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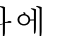



#### 가. ~ 산업단지간 연계도로 확장공사

토공운반을 위한 토취장 및 사토장 진입로 개설비용이 현장여건상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L=200m 설치비용 4,660천 원을 감액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 나. 도로(호) 도로확장공사

가공이 불필요한 장철근 5.98톤을 가공 물량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공장에서 가공이 가능한 철근 12.21톤을 현장 가공으로 반영하여 5,620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으며, 도로 화강경계석 설치 시 경계석 기초에 유로폼을 설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현장 시공 시 유로폼을 설치하지 않고 경계석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과다 계상된 유로폼 설치비 32,240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으로 감액하지 않았다.

#### 조치할 사항 고령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생태계보전협력금<sup>35)</sup> 납부를 위해 관련 사항도 과에 통보하시기 바라며, 과다 계상된 사업비 42,520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35) 현 생태계보전부담금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고령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고령군 ■■■과에서는 다음 [표 1]와 같이 ▲▲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공사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급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 생태하천 복원사업	●●	◆◆ ■	생태 환경복원 L=6.5km	4,584	'19.8.1.	'19.8.9.~ '22.12.21.	☆☆종합건설(주) ▽▽▽ ○○종합건설(주) △△△	

### 1. 설계변경 원가심사 미이행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설 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제2절 및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에 의하면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시·도 계약심사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으로 10% 이상 증액이 발생하면 경상북도에 설계변경 원가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고령군 ■■■과에서는 총괄 2회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으로 누적변경금액이 아래의 [표 2]와 같이 14% 이상 증가되어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 후 변경계약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2회~5회) 총 4회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은 채 아래 [표 2]와 같이 변경계약 후 준공한 사실이 있다.

[표 2] 설계변경 내역

(단위 : 천 원)

회 차	당 초	1회 변경	2회 변경	3회 변경	4회 변경	5회 변경
계약금액	3,503,827	3,782,900	4,090,400	4,270,900	4,498,400	4,776,400
증감금액		22,927	586,573	767,073	994,573	1,272,573
E/S			93,957	67,367	25,198	
변경대상 금액			486,616	699,706	969,375	1,272,573
누적 증감 비율		0.65%	14%	20%	28%	36.3%

그 결과 총괄 2회 이후 변경된 물량(11,394m<sup>3</sup>에) 대한 전석쌓기 및 붙임에 사용된 돌은 자연석 4목(400×500×600) 및 자연석 6목(500×600×700)으로 체적이 0.3m<sup>3</sup> 이하인 돌메쌓기 및 붙임을 적용하지 않고 변경 설계서상 0.3~0.5m<sup>3</sup> 큰돌을 쌓는 품(전석쌓기 및 붙임)으로 반영하였으며, 또한 호안공(하중도 설치) 사면 경사가 1:2로 설계되어 있어 돌붙임품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경사도가 1:1보다

급한 경우에 적용하는 돌쌓기품으로 반영하여 공사비 37,300천 원(제경비포함)을  
과다 계상 후 준공하여 예산이 낭비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2. 하천기본계획 변경 여부 검토 및 치수분석 미이행

「하천법」(법률 제15405호, 2019. 2. 22.) 제25조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이용, 자연친화적 관리·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수자원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계획홍수량을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증가시키는 것, 계획하폭을 100분의 10이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10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미한 사항은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597호, 2019. 2. 22.) 제13조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또는 변경 목적,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환경부)에 따르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전 사업대상 하천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을 사전 수립(변경)하여야 하며,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변경)된 하천에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령군 ■■■과에서는 ▲▲▲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친수시설(생태저수호안, 물웅덩이, 하중도)에 대한 홍수위 관련 검토를 하지 않고 추진하였으며 홍수위가 상승 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검토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한 후 준공하였다.

그 결과 감사이후 친수시설에 대한 치수분석 후 하천기본계획(변경)시행 및 친수시설 설치구간의 제방이 계획 홍수위에 따른 여유고를 만족하지 못 할 경우 제방보축 공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결과가 초래 될 것으로 보여 진다.

#### **조치할 사항 고령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해당 하천에 대해 「하천법」에 따라 치수분석 후 하천기본계획(변경)시행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 순환도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고령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고령군 ■■■과에서는 2020. 5. 21. ◎◎종합건설(주) 대표 ◇◇◇과 계약하여 “▼▼▼ 순환도로 정비사업”을 아래 [표 1]과 같이 공사 중에 있다.

[표 1] 공사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내용	총공사비			사업기간	시공사 (대표자)	비고 (공정률)
		계	도급	관급			
▼▼▼ 순환도로 정비사업	도로개설 L=1.57km, B=28m	4,047	2,140	1,907	'20. 5. 28. ~ '23. 4. 1 .	◎◎종합건설(주) ◇◇◇	60%

###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제46조에 따르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8조, 제49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약내용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약내용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 ■■■■과-1437(2020. 3. 2.)호로 회신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약내용에 따르면 협의의견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사업승인 시 반영하고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현장사무소에 협의의견과 평가서의 저감방안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며, 수시로 협약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령군 ■■■과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약내용을 통보받았을 때 협약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착공 등을 하려는 경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며, 협약내용과 평가서의 저감방안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기록·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 순환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착공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수시로 협약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지 않는<sup>36)</sup>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약내용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 2.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 미이행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르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36) 협약내용에 따르면 관리대장에 침사지 관리현황을 기록·비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침사지 관리현황을 기록하지 않음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령군 ■■과에서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착공통보하고,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고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 순환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2020. 2. 4. 고령군 ♡♡♡♡과로부터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착공통보를 하지 않고, 관리대장을 소홀히 관리하는 등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 3. 건설공사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에 대하여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로 품질검사를 실시

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와 20m<sup>2</sup> 이상의 시험실 규모를 갖추고, 초급기술인 이상인 건설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표 2] 품질관리 부적정 현황

공 사 명	품질시험계획 수립 여부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품질관리자	비고
▼▼▼▼ 순환도로 정비사업	미수립	미구비	설치	미배치	

그런데 고령군 □□과에서는 “▼▼▼▼ 순환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위 [표 2]와 같이 품질시험계획을 미수립하는 등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4. 4대보험 등 보험료 정산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르면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고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 10. 8.)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

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하며,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안에서 정산하도록 되어있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 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 금액으로 정산하고,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령군 □□과에서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확인하여 일용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상용근로자의 경우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여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 순환도로 정비사업” 준공금(1차분, 2차분)을 지급하면서 상용근로자의 경우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간접노무비 대상인 현장대리인<sup>37)</sup>의 보험료를 아래 [표 2]와 같이 4,149천 원 (제경비 포함)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표 2] 보험료 부당지급 내역(1차분, 2차분)**

(단위 : 원)

구 분	준공 시 정산액(A)	감사 시 재산정액(B)	부당지급액 (A-B)
건강보험료	1,776,080	448,640	-1,327,440
연금보험료	2,152,260	540,000	-1,612,260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205,700	51,670	-154,030
[보험료 소계]	4,134,040	1,040,310	-3,093,730

37)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지 않은 현장대리인은 현장 관리 인력에 속하여 간접노무비 등에 포함된 것으로 사후 정산대상에서 제외

구 분	준공 시 정산액(A)	감사 시 재산정액(B)	부당지급액 (A-B)
일반관리비 (순공사원가 × 요율%)	248,042	62,418	-185,624
이윤 ((노+경+일관)×요율%)	657,009	164,545	-492,464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10%)	503,909	126,727	-377,182
합 계	5,543,000	1,394,000	4,149,000

## 5. 설계변경 부적정 등 공사비 과다 계상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 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고령군 ◻◻과에서는 “▼▼▼▼ 순환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옹벽 설치를 위한 철근을 공장 가공이 아닌 현장 가공으로 하고 절곡이 불필요한

장철근을 가공 물량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11,039천 원(제경비 포함)을 낭비하였고, 2021. 7. 19. 설계변경 시 PC암거 설치비를 단가산출 시 본당 단가로 산출 후 내역서에 단위를 m로 반영하여 25,735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으며, 2022. 8. 18.부터 2022. 12. 3.까지 ♥♥리 206-14번지 일원에 사토를 반출하였음에도 실정보고를 하여 정산하지 않아 20,445천 원을 감액하지 않았고, 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실제 현장에 설치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 현장 내 설치가 가능한 구간이 없음에도 12,089천 원을 감액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설계와 다른 시공 및 과다 설계 등으로 공사비 58,269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고, 11,039천 원(제경비 포함)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6. 공사감독 업무 소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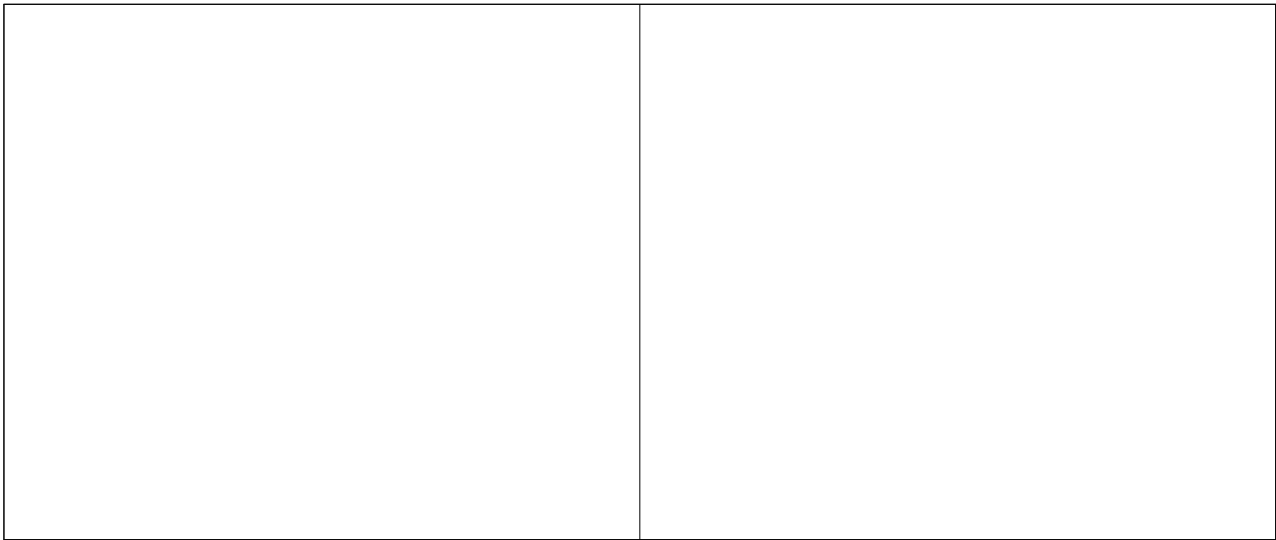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4조, 제138조 및 제14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단계별 시공상태의 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 목적물이 적정하게 시공되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일 현재 현장확인 결과 고령군 □□과에서는 “▼▼▼▼ 순환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품질시험 및 검측을 소홀히 하였고, 설계도서(도면)에 경계블록 전·후면에 거푸집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재시공 명령을 하지 않는 등 공사 목적물이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작업단계별 시공상태 확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자전거도로 노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균열이 생기도록 하였고, 재시공<sup>38)</sup> 비용 약 102,700천 원이 발생되게 하였다.

**[사진] 부적정 시공 현황**



**조치할 사항 고령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자전거도로 노면에 균열이 생긴 구간은 재시공하시기 바라며, 과다 계상된 사업비 58,269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고, 부당 지급된 사업비 4,149천 원은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38) 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도막 재포장 A=1,766㎡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고령군  
 관 계 부 서 0000과  
 내 용

고령군 0000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0000 ♥♥(△△)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외 1건을 계약하여 공사 중에 있다.

[표 1]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계 약 금 액	계 약 일	사 업 기 간	도 급 자 (대 표 자)	비 고 (공 정 률)
0000 ♥♥(△△)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고령군 0000면 ♥♥리	오·우수관로 신설 L=15,996m 및 하수처리장1식	13,132	2020. 12. 3.	2020. 12. 7. ~ 2023. 12. 1.	00000000000000000000 외 1개사	8%
0000 ♥♥(△△)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외 1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고령군 0000면 ♥♥리	건설사업관리 1식	2,611	2021. 5. 18.	2021. 5. 24. ~2024. 11. 30.	0000엔지니어링 외 1개사	
0000 0000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고령군 0000면	오수관로 신설 L=9,255m 및 하수처리장1식	4,778	2019. 9. 2.	2019. 9. 6. ~2023. 6. 4.	0000종합건설(주)	70%
0000 0000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고령군 0000면	건설사업관리 1식	1,097	2019. 6. 14.	2019. 7. 1. ~2023. 7. 28.	0000엔지니어링 외 1개사	

###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르면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표 2]와 같다.

[표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협의 요청시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 보전관리지역 : 5,000 제곱미터 2) 생산관리지역 : 7,500 제곱미터 3) <b>계획관리지역 : 10,000 제곱미터</b> ※ 「하수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하수관로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관로만 해당)이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되는 경우 제외	사업의 허가·인가 승인 전

따라서 고령군 ⅢⅢ과에서는 “♣♣ ♥♥(△△)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된다면 사업 승인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를 제외한 계획관리지역 내 사업구역 면적은 약 15,878㎡으로 계획관리지역 대상면적인 10,000㎡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승인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공사를 하였다.

## 2. 건설공사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에 대하여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4조, 제90조, 제139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고 시공자가 품질시험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sup>39)</sup>을 요청하여야 하며, 품질시험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령군 ⅢⅢ과에서는 “☹☹ ♥♥(△△)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임에도 품질시험계획을 미승인한 채 시공자로 하여금 품질시험을 수행하게 하는 등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3. 공사원가 과다 계상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39)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함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 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고령군 ⅢⅢ과에서는 “♣♣ ♥♥(△△)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차선도색 2,888㎡에 사용되는 노면 표지용 페인트 655포를 관급자재로 구입하지 않고 사급자재에 반영하였고, 용착식 페인트의 경우 페인트에 유리알을 포함<sup>40)</sup>하고 있어 별도로 계상하지 않아야 함에도 중복으로 계상하여 49,930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고, 관로 되메우기 시 모래다짐을 제외한 다짐장비를 콤팩터가 아닌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를 사용하였음에도 60,140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하지 않았으며, 터파기 시 대형장비(백호0.7㎡)의 경우 인력이 불필요함에도 인력을 10% 계상하여 146,780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또한, “∈∈ ∋∋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임에도 품질관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여 99,875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 후 지급하였고, 관로 되메우기 시 모래다짐을 제외한 다짐장비를 콤팩터가 아닌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를 사용하였음에도 31,172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하지 않았으며, 하수처리시설 진입로 선형변경에 따른 조경석 쌓기 품을 화단,수로 경계등의 수직방향의 사면을 조성하는 조경유용석 쌓기 품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관이 고려된 경관(글자석, 상징석 등)을 조성하는 품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비 11,332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그 결과, 설계와 다른 시공 및 과다 설계 등으로 공사비 399,229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0)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제3절 노면표시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용착식 노면표지용 도료(3호)의 경우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5%(무게%) 이상 함유하도록 되어 있으며, 용착식 페인트의 경우 페인트에 유리알을 함유하고 있어 별도로 계상할 필요는 없음

## 조치할 사항 고령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품질시험계획 미승인 등 품질관리 소홀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과다 계상된 사업비 287,983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고, 부당 지급된 사업비 111,246천 원은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건축허가(신고) 업무 부적정  
소 관 청 고령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1. 내화구조 검토 부적정

「건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3층 이상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20. 1. 25.)」 제3조에 따르면 내화구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붕의 경우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로 된 것,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에 따라 인정한 구조 등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고령군 ▲▲▲▲▲과에서는 아래의 [표 1]과 같이 ■■■읍 ○○리 205번지 상에 ‘건축주 ■■■’이 신청한 노유자시설의 증축허가를 처리하면서 주요구조부인 기둥이 경량철골구조로 되어있는데 내화페인트 칠을 하더라도 경량철골구조는 내화구조로 인정되지 않아 건축허가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 검토를 소홀히 하여 건축허가를 처리해 준 사실이 있다.

[표 1]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미설치 현황

구분	대지위치	허가신청일 (허가일)	건축주	용도	연면적(㎡)		층수	비고
					기존	신청		
허가	고령군 ■■■읍 ○○리 205	2022.5.13. (2022.5.23.)	■■■	노유자 시설	660.94	84.95	3	내화구조 미설치 (경량철골조 설치)

## 2. 건축신고 처리 부적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는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거나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고령군 ▲▲▲▲▲과에서는 다음 [표 2]와 같이 ‘건축주 ○○○’가 고령군 ◇◇면 ◆◆리 518-2번지 상에 신청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의 증축에 따른 건축신고에 대하여 기존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93.45제곱미터이고 41.47제곱미터를 증축하면서 500제곱미터를 초과한 534.92제곱미터가 되어 제조업소가 아닌 공장으로 증축 및 용도변경 허가로 처리해야 했으나 건축신고로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2] 건축신고 수리 부적정 현황

구분	대지위치	신고일 (신고수리일)	건축주	용도	연면적(m <sup>2</sup> )		비고
					기존	신청	
증축	고령군 ◇◇면 ◆◆리 518-2	2020.12.28. (2021.1.6.)	○○○	제조 업소	493.45	41.47	용도 부적정

### 조치할 사항 고령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부적정  
소 관 청 고령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고령군 주택 조례」 제4조 및 「고령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제4조 따르면 고령군수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두 조례에서 지원 대상은 단지 내 주도로(보도포함)의 유지보수, 보안등의 유지보수, 상·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 운동시설의 유지보수, 노인정의 유지보수, 담장의 유지보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사업으로 되어 있고, 2020년 5월 27일 「고령군 주택 조례」, 「고령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동주택의 외벽도색 및 옥상방수가 추가되었다.

그런데 고령군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0년 위 조례 개정 전으로 인해 지원할 수 없는 도색 및 누수에 대한 지원을 해주었으며, 주차장 확장공사, 승강기 안전조치 및 수리 등 지원 대상이 아닌 공사에 대해서도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등 총 13건(사업비 : 288,232천 원)을 고령군 관내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한 사실이 있다.

[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부적정 내역

(단위 : 천 원)

연번	해당연도	지원사업 대상	지원금액	공사내용	지원 대상 근거
합계		13건	288,232		
1	2020년	☆☆☆☆ 아파트	27,300	옥상 지붕설치공사	고령군 주택 조례
2	2020년	★★★★★	21,800	주차장 확장공사	고령군 주택 조례
3	2020년	◁◁아파트	10,900	옥상 지붕설치공사	고령군 주택 조례
4	2020년	▷▷빌라	20,000	옥상 지붕방수공사	고령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5	2020년	♥♥빌라 101,102동	20,000	내외부 도색공사 및 누수공사	고령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6	2020년	♥♥빌라 103,105동	20,000	내외부 도색공사 및 누수공사	고령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7	2020년	♻️♻️빌라	20,000	옥상 지붕방수공사 및 내외부 도색	고령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8	2020년	☒☒빌라	14,560	옥상 지붕방수공사	고령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9	2020년	◆◆빌라 C동	20,000	옥상 지붕방수공사 및 벽면방수 공사	고령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10	2020년	♣️♣️♣️ A동	17,336	옥상 지붕방수공사	고령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11	2020년	♣️♣️♣️ B동	17,336	옥상 지붕방수공사	고령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12	2022년	▮▮▮▮ 아파트	50,000	승강기 안전조치 및 수리	고령군 주택 조례
13	2022년	◁◁아파트	29,000	승강기 안전조치 및 수리	고령군 주택 조례

조치할 사항 고령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주의)